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예방대책 업무편람



2023. 1.

알아두기

유의사항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예방대책 업무편람』은 대테러 관계기관의 소관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테러예방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으며, 목적 외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1. 테러예방대책의 수립

- 「테러방지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관계기관*은 소관 테러대상 시설(국가중요시설·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히, 시설관장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의 대상시설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대테러 테러예방대책(안전대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 시설관장주무기관*은 시설관장국가기관의 추진방향을 참고하여 소관 시설의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테러예방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함.

* 개별 법령에 따라 소관사무의 직무권한 범위에 있는 시설·장비 등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관련기관(권한을 위임·위탁한 경우에는 수임·수탁기관을 말함)

- 테러예방대책 수립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① 인원·차량에 대한 출입 통제 및 자체 방호계획
- ② 테러 첩보의 입수·전파 및 긴급대응 체계 구축 방안
- ③ 테러사건 발생 시 비상대피 및 사후처리 대책

-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테러사건 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물자 및 편의 제공과 지역주민의 긴급대피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함.



- 시설관장국가기관은 지역테러대책협의회에서 의결한 테러예방·사후처리 지원대책 등이 전체 테러대상시설에 적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대책 추진방향을 보완하여 관련 시설관장주무기관에 제시할 수 있음.

〈 대테러활동 개념 〉

예방·대비	대응(사건발생)	수습·복구
① 테러정보 수집·전파 ② 신고체계 확립 ③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 수단 선별·관리 ④ 대테러 인력·시설·장비·물자 확보 ⑤ 긴급대응체계 구축 ⑥ 테러대응 교육·훈련	① 비상연락 ② 비상대피 ③ 상황보고 ④ 긴급 대응체계 가동 - 사건대책본부 및 현장지휘본부 가동 ⑤ 긴급 구조·구호	① 물리적 수습·복구 - 피해시설 응급 복구 - 시설·시스템 정상화 ② 심리적 수습복구 - 피해가족 지원 - 국민 심리 안정 - 사상자 치료 및 장례지원 ③ 피해확산 방지

2. 업무편람의 활용

- 이 업무편람은 관계기관에서 테러예방대책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 요령과 예시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음.
- 관계기관별 대책에는 소관 테러대상시설의 특성과 기관 고유의 역할 등 자체 실정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함.
- 「테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운용 중인 기관*은 업무편람을 참고하여 자체 테러예방 대책을 수립하거나, 기존 실무매뉴얼에 법적 의무사항을 추가 보완하여 테러예방대책으로 대체 활용할 수 있고
 - 그 밖의 기관은 이 업무편람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따라 목차 구성 및 세부내용을 구체화하여 수립하여야 함.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61호)에 따라 테러 위기관리 표준매뉴얼(1개), 테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11개) 운용 중

목 차 C O N T E N T S

I

개요

1	추진 목표	8
2	관계 법령·규정	8
3	적용범위	9
4	테러대상시설 지정·관리	10
	가. 테러대상시설 지정 등 절차	10
	나. 테러대상시설 지정목록 관리	12
5	예상 테러유형 및 시나리오	12

II

분야별 세부대책

1	인원·차량에 대한 출입 통제 및 자체 방호계획	16
2	테러정보의 수집 및 전파	22
3	긴급대응 체계	24
	가. 테러경보 단계별 임무 및 역할	24
	나. 대테러 긴급대응 자체조직 구성·운영	27
4	테러사건 발생 시 비상대피 및 사후처리 대책	32
	가. 비상대피(지원)	32
	나. 긴급 구조·구호활동	34
	다. 수습 및 복구활동	36
	라. 사후조치	38



5	교육 및 훈련	39
6	언론대응 및 홍보	40

III

대책의 적정성 평가 및 이행실태 확인

1	테러예방대책 적정성 평가 및 수준진단	44
2	테러예방대책 이행실태 확인	45

별 지·서 식

< 별 지 >

1	대테러 종합 체계도	48
2	테러예방대책 적정성 평가표	49
3	테러예방대책 이행실태 확인표	50

< 서 식 >

1	테러 관련 유관기관 연락처	51
2	테러대상시설 지정 현황	52
3	테러대상시설 현황	53

목 차

C O N T E N T S

부 록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56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64
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85
4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규정 ...	91



개요



I 개요

1 추진 목표

작성중점

- 소관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예방 등의 추진 목표 작성

작성예시

- 각종 테러로부터 국민(주민)의 생명·재산 보호 및 안전확보
- 테러 예방·대응·복구를 위한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
- 테러 취약요소 제거 등 사전 테러예방
- 테러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처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위한 긴급대응 및 비상대피체계 구축
- 테러 발생 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신속한 사후 복구체계 구축

2 관계 법령·규정

작성중점

- 테러예방대책 수립 등 대테러활동과 관련된 공통법령(테러방지법), 개별 기관의 소관법령 및 관련 규정(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규정) 기술

작성예시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제11조(테러취약요인 사전 제거)
- 국민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 제22조(테러경보), 제23조(상황전파), 제24조(테러사건 대응), 제25조(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 대책 수립), 제27조(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장(재난의 대비), 제6장(재난의 대응), 제7장(재난의 복구) 등
-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규정(이하 '테러대상시설 등 안전대책 규정'이라 함)

3 적용 범위

작성중점

- ➡ (적용분야) 관계기관의 관장업무 영역에 따라 시설별 대테러 활동 적용분야 기술
- ➡ (적용기관) 테러예방대책이 적용되는 소속 및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기술
- ➡ (대상시설)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테러대상시설(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중 해당기관이 관장하는 시설

작성예시

- (적용분야) ○○기관이 소관하는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테러 예방 활동 수행 및 모든 유형의 테러(위협) 사건 발생 시 대응·사후조치 등에 적용
- (적용기관) ○○테러예방 및 대응 조치를 수행하는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등
- (대상시설)

가. 국가중요시설(00개)

- 정부기관(0), 교통(0), 공항(0), 항만(0), 산업(0), 전력(0), 방송(0) 등

나. 다중이용시설(교통수단:00개, 건축물:00개소)

- 교통수단(00개) : 항공기(0), 철도차량(0), 도시철도(0), 여객선(0)
- 문화 및 집회시설(00개소) : 공연장(0), 전시장(0), 집회장(0) 등
- 판매시설(00개소) : 백화점(0), 쇼핑몰(0), 마트(0), 시장(0) 등
- 숙박시설(00개소) : 호텔(0), 콘도(0) 등
- 의료시설(00개소) : 병원(0) 등
- 종교시설(00개소) : 성당(0), 교회(0), 사찰(0) 등
- 운수시설(00개소) : 철도역사(0), 지하철역사(0), 버스터미널(0) 등

4 테러대상시설 지정·관리

가. 테러대상시설 지정 등 절차

작성중점

- ➡ 관계기관이 관장하고 있는 시설물 중 테러대상시설로 지정 또는 해제하기 위한 신청 절차와 관리방법 등 기술
- ➡ 테러대상시설 중 다중이용시설은 「테러대상시설 등 안전대책 규정」 제3조~제6조에 따라 대테러센터와 사전 지정 협의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 테러대상시설 중 국가중요시설은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과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을 의미하므로 지정 및 해제 절차는 「통합방위법」과 「보안업무규정」에 따름

참고자료

「테러대상시설 등 안전대책 규정」의 테러대상시설 지정 및 해제 절차

- 지정 기관 : 시설관장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 지정 기준
 - 시설관장국가기관은 「테러대상시설 등 안전대책 규정」 제3조(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대상 시설 지정 기준) 및 별표 1에 따라 테러대상시설을 지정할 수 있음
 - 또한, 소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지정 기준이 필요한 경우 대테러센터와 협의하여 지정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지정 협의(「테러대상시설 등 안전대책 규정」 제4조 및 제5조 관련)
 - 협의 기관 : 시설관장국가기관은 소관 다중이용시설 중 테러대상시설 지정 등을 대테러센터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협의 대상 : 테러대상시설의 신규 지정, 지정 해제, 등급 변경
 - 협의 시기 : 정기(매년 9월), 수시(시설관장국가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설 관련사무가 지자체 등에 이관·이양된 경우의 지정 협의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지자체 등’이라 함)은 소관 다중이용시설의 테러대상시설

지정, 지정 해제, 등급 변경 또는 테러대상시설 지정 기준의 변경 등에 관한 요청 및 대테러 센터와의 협의 시기 등에 관한 의견을 시설관장국가기관에 제출할 수 있음

- 이 경우 지자체 등은 시설관장국가기관에 의견을 제출하기 전 해당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의 협의를 거칠 수 있음

- 지자체 등으로부터 요청 또는 의견을 제출 받은 시설관장국가기관은 이를 검토한 후 대테러 센터와 협의하여야 함

● 테러대상시설의 지정 및 결과 통보

- 대테러센터와 협의를 완료된 경우 시설관장국가기관은 해당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테러대상 시설의 신규 지정, 지정 해제 또는 등급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기관 및 시설소유자 등에 통보하여야 함

* 단 해당시설 외 다른 시설에 대한 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서는 아니 됨

- 지자체 등에 시설 관련사무가 이관 · 이양된 경우 시설관장국가기관은 테러대상시설의 지정목록과 통지 방법 등을 해당 지자체 등에 통보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해당 지자체 등은 동 방법에 따라 해당 테러대상시설에 신규 지정 또는 지정 해제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음

● 관계기관 의견 수렴

- 시설관장국가기관은 테러대상시설의 신규 지정, 지정 해제 및 등급 변경 등과 관련하여 대테러센터와 협의 이전에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나. 테러대상시설 지정목록 관리

작성중점

- 기관별 소관 테러대상시설의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테러대상시설 지정목록 및 시설별 현황을 작성·관리하고 현행화하기 위한 절차 마련(「테러대상시설 등 안전대책 규정」 제7조 참고)

참고자료

테러대상시설 지정목록 관리 절차(「테러대상시설 등 안전대책 규정」 제7조 관련)

- 시설관장주무기관은 소관 테러대상시설의 개별 현황을 「테러대상시설 등 안전대책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 또한 시설관장국가기관 및 시설관장주무기관은 소관 테러대상시설의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정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상의 대외비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함
 - 테러대상시설의 지정목록에는 시설명, 등급, 연면적, 소재지, 용도(시설구분)* 등 시설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되, 상세내용은 해당 시설관장국가기관 또는 시설관장주무기관에서 정할 수 있음
- * 용도는 「테러대상시설 등 안전대책 규정」 별표1(다중이용시설의 테러대상시설 지정 기준)의 '시설구분'의 대분류와 소분류에 해당하는 각각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시설관장국가기관은 소관 테러대상시설의 전체 목록을 매년 11월말까지 대테러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5 예상 테러유형 및 시나리오

작성중점

- 아래의 테러유형을 참조하여 테러대상시설 분야별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테러양상(시나리오)을 기술

테러유형 예시

국내일반테러 • 총기 • 인질 • 화생방테러 • 차량돌진 등

항 공 테 러 • 납치(불법억류) • 항공기 • 공항시설 파괴 • 항공기 납치 • 돌진 등

해 양 테 러 • 인질 • 납치 • 선박 및 해상구조물 점거 • 충돌 • 파괴 • 선박 납치 • 돌진 등

군사시설테러 • 파괴 • 습격 • 군 인사 인질 · 납치 · 암살 등

국 외 테 러 • 재외국민 인질 · 납치 · 살해 • 우리나라 관련 시설 점거 · 파괴 등

화 학 테 러 • 유해화학물질 살포(취정수장, 다중밀집시설 등) • 제조 · 보관시설 폭파
• 운반 탱크로리 탈취 · 파괴 등

생 물 테 러 • 병원체 및 독소 살포 • 병원체 포함 우편 발송 등

방 사 능 테 러 • 오염(살포 · 폭발) • 시설 · 장비 파괴 • 장비 · 물질 · 운반차량 탈취 등

기 타 테 러 • 드론테러 • 방화테러 • 감염병 테러

작성예시

● 항공테러

- 운항중인 항공기 납치 또는 폭파
 - 항공기 불법점거, 운항노선 변경 및 착륙 시도
 - 항공기 내 무력으로 불법행위 시도
 - 항공기 폭파 또는 납치 협박
- 항공기 및 여객터미널 공항시설 폭파 위협
 - 항공기 내 또는 공항에 무기, 위험장치 등 물품반입 행위
 - 항공기 안전운항에 피해를 주는 항행시설 파괴 또는 손괴
 - 대기 중인 항공기, 승객, 승무원 등 안전위협 거짓정보 제공
- 여객터미널 또는 공항시설 폭발물 폭파
- 공항내 화생방 테러물질 발견



분야별 세부대책



II 분야별 세부대책

1 인원·차량에 대한 출입 통제 및 자체 방호계획

작성중점

- ➡ 시설소유자 등은 소관 테러대상시설물의 테러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원·차량 출입통제 및 자체방호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 ➡ 관계기관은 관장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설소유자 등이 자체 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 또는 참고자료를 제시

작성예시

인원·차량에 대한 출입 통제 및 자체 방호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① 근무자(임시근무자 포함)에 의한 보안침해 보고 체계 구축(상황실, 당직실 등)
- ② 시설이용자 등의 출입관리

〈 테러경보에 따른 단계별 출입관리(예시) 〉

- ▶ 관심 : 통상적인 출입문 운영 등 대테러 업무수행
- ▶ 주의 : 외부 인원·차량 출입 감시·순찰 강화 등
- ▶ 경계 : 출입문 운영 개소 감축, 주차구역 제한, 순찰 횟수 증가 등
- ▶ 심각 : 출입문 제한 또는 폐쇄, 근무인원 증원배치 등

- ③ 시설이용자의 대형 소지품 관리

- 총기류·폭발물·화생방 물질 등의 반입이 제한될 수 있도록 출입 시 부피가 큰 소지품은 별도 보관(필요시 보안검색대 운용)

- ④ 다중이용구역과 그 외 구역 분리

- 출입 제한구역은 출입증 소지자 등 근무자만이 출입, 외부 작업자 등 출입 필요시 직원 입회하에 출입 및 관련 출입기록 유지
- 업무시간 또는 활동시간 외 일반인의 해당구역 출입 통제 필요

⑤ 시설 내·외 순찰 및 검색(테러 의심자의 소지품 검색 등 포함)

- 정기·수시 순찰(취약시간대 순찰·경비 강화), 보안점검 실시
* 필요시 검색, 경보단계별 순찰 횟수 또는 근무인원(시간)의 증감, 담당구역 설정
- 시설(청사 등) 주변 CCTV, 방호울타리 등 적절한 보안설비 마련
- 순찰 시 테러의심사항 및 보고대상은 시설별 대테러책임자에게 보고
- 비상 연락체계 구축 및 수시 현행화 등 정비
-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장비의 확보 및 운용

⑥ 주차관리

- 내부(직원) 차량과 외부 차량을 구분할 수 있도록 사전 등록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출입증 발급 등 별도 조치
- 차량돌진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볼라드, 충돌방지 장애물 등 차량진입 차단 시설 설치
- 테러의심차량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테러의심차량의 특징〉

- ▶ 시설 주변 장기간 방치 차량
- ▶ 경찰·소방·구급차 위장차량
- ▶ 주기적으로 특정지역을 배회하는 차량
- ▶ 차량에 인원이 장기간 머물러 있는 차량
- ▶ 대형차량 또는 무거운 짐을 탑재한 것처럼 보이는 차량
- ▶ 내부 투시가 불가할 정도로 차창 유리에 짙은 착색을 한 차량
- ▶ 위험물(인화성물질 등)을 싣고 시설 내부 및 주변에서 장시간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

작성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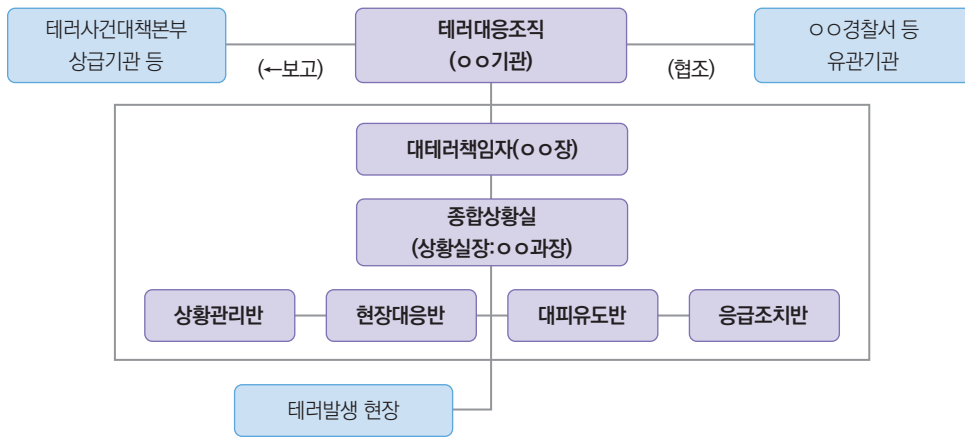
● 조직 및 체제 구축

- 대테러 책임자 지정
 - 대테러 책임자 : ○○장

대테러 책임자의 역할 및 임무

- ▶ 테러위험 평가 및 관련 근무자 교육·훈련 업무
- ▶ 테러예방대책의 수립·시행, 적정성 평가 및 보완 업무
- ▶ 테러 위험시 대응 및 관계기관 전파 업무
- ▶ 비상대피여부 결정, 대피장소 지정 등 비상대피 업무

● 테러대응조직 체계도



● 종합상황실 운영

상황실장	00지원과장
구성	00지원과원
주요 임무	▶ 반별 운영 총괄 ▶ 인력동원, 계획 및 조정 ▶ 유관기관 연락체계 유지 ▶ 경찰, 소방, 유관기관 현장안내

● 반별 편성

상황관리반	현장대응반	대피유도반	응급조치반
○○과	○○과	○○과	○○과

● 반별 임무

구분(반장)	주요임무 및 역할
상황관리반 (○○과장)	▶ 상황판단회의 자료 작성, 상황 종합 및 기록 ▶ 상황 진전에 따라 테러사건대응본부에 보고
현장대응반 (○○과장)	▶ 위험지역 통제 및 안전 조치 ▶ 위험요인 제거 및 2차 피해 방지
대피유도반 (○○과장)	▶ 관람객 및 직원 대피유도
응급조치반 (○○과장)	▶ 관람객 및 직원 안전조치, 인명구조

● 인원 출입통제

● 출입구 현황

구분	주출입구	보조출입구	
개소	2(○○ 입/출구)	3(○○/○○/○○)	
개방시간	06:00~19:00	○○동	06:00~18:00
		○○홀	00:00~24:00

* 24시간 경비요원 상주(야간 : 정문 0명, ○○홀 0명, ○주차장 0명)

● 출입자 통제 및 감시

- 출입구 경비 · 안전요원 배치
- 출입구 CCTV설치 및 모니터링 실시(방재센터)
- 출입구 경비인력 및 CCTV 현황

구분	경비 · 안전요원	CCTV설치대수
주출입구	0명	0대
보조출입구	0명	0대

● 보안 장비를 이용한 외부인 통제

- CCTV장비를 통해 전시관 내 · 외부 다중이용구역 모니터링
- 사무동 등 다중이용구역 외의 구역은 전자잠금장치(출입증) 등을 통해 해당구역 근무자만 출입 할 수 있도록 통제
- 보안장비 현황 ※ 자세한 현황은 참고1 · 2 참조

장비명	CCTV		출입통제
구 분	○○관내	옥외	출입증 카드리더기
수 량	○○대	○○대	○○대

● 시설 이용자의 대형 소지품 관리

- 출입 시 총기류 · 폭발물 · 화생방 물질 등의 반입이 제한될 수 있도록 출입구 등에서 부피가 큰 소지품 (대형 가방 등)을 별도로 보관조치
- 조치에 불응하거나 테러 물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신속히 112로 신고

● 시설 내 · 외부 순찰 및 검색

- 테러의심자, 의심물품 차량 등을 사전에 관찰하고, 비상대피로의 이상유무 등을 확인
- 방호 및 당직 근무상황 등을 일지에 기재 · 유지

● 근무자에 의한 보안침해 보고체계 구축

- 업무 특성상 시설 내 이상 유무의 파악이 용이한 현장근무자가 테러의심자, 폭발물 의심 물질 등 의심사항을 현장 책임자(또는 대테러책임자)에게 보고

〈 테러 의심상황 발견 시 보고체계 〉

주체	현장근무자(○○운영요원/방호요원)
대응	즉시 경찰서(112), 국정원(111), 소방서(119)에 신고 유관기관 신고후 현장 책임자에게 보고



주체	현장책임자(○○운영매니저/방호팀장)
대응	경찰서(112), 국정원(111), 소방서(119) 등에 상황 신고 상황실장(○○과장)에게 보고



주체	상황실장(○○과장)
대응	대테러책임자(○○장)에게 보고



주체	대테러책임자(○○장)
대응	테러대응 조직 가동

참고 1 CCTV 설치 현황 (실제 작성 시 별지에 배치)

〈20XX. X. 현재〉

설치위치	종류	수량(대)
본관 0층 사무동 복도	고정형	0
○○관 복도, 자료실,	고정형(0대), IP카메라(0대)	0
본관 0층 ○○관	회전형(0대), IP카메라(0대)	0
소계	고정형(0대), 회전형(0대), IP카메라(0대)	00

참고 2 출입통제용 카드리더기 설치 현황 (실제 작성 시 별지에 배치)

〈20XX. X. 현재〉

구분	설치 위치	수량(대)	비고
본관 지하 1층	계단-1	0	
	전기작업실	0	
	전시작업실	0	
	설비작업실	0	
본관 1층	화물 E/V A구역	0	
	계단-1	0	
	중앙홀 좌측 계단-2	0	
소계		00	

● 차량 출입통제

● 주차장 시설 현황

〈20XX. X. 현재〉

구분		지상주차장
면적(m ²)		000 m ²
주차대수	대형(버스 등)	00 대
	소형(승용차 등)	000 대
경비원 배치(명)		주/야 각 0명
출입차량 번호인식 CCTV		0대

● 차량 돌진 등 예방

- 시설 내 주차장 안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진입로 수는 최소한으로 설치하며, 진입로는 차량 돌진을 막기 위한 적절한 설비 구축(바리케이드, 볼라드 등)

● 차량돌진 방지시설 현황

〈20XX. X. 현재〉

설치위치	종류	수량(기)
정문	볼라드(0기), 차단봉(0기), 바리케이드(0기)	0
지하주차장 입구	차단봉(0기)	0
후문	차단봉(0기), 바리케이드(0기)	0
소계	볼라드(0기), 차단봉(0기), 바리케이드(0기)	00

● 차량 및 탑승자 관리

- 납품 · 시설보수 작업 등과 관련된 차량은 해당부서에서 ○○과로 사전에 통보, ○○과는 주차요원에게 통보
- 주차요원은 통보되지 않은 차량 진입 시 해당 부서에 확인 · 기록 후 출입조치하고, ○○과에 알림
- 수상한 차량, 거동 수상자 발견자는 그 사실을 ○○과에 보고
- 경비요원은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야간에 주차 중일 경우 주차 사유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일지에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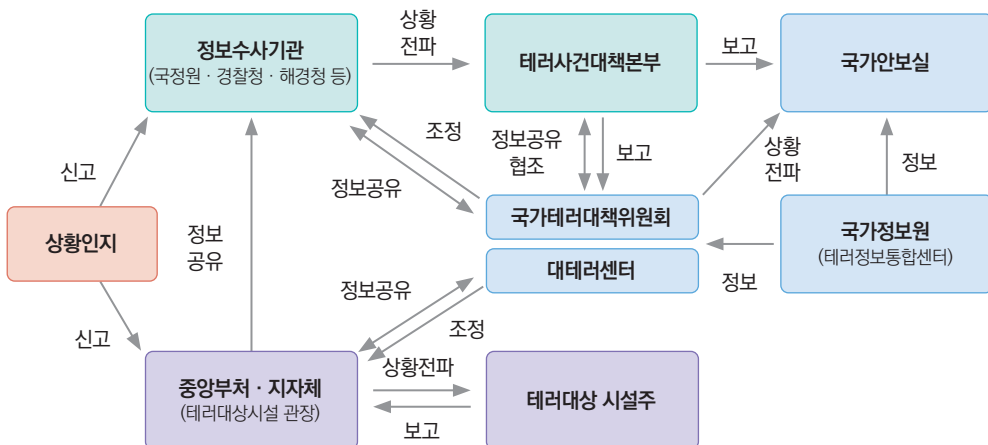
2 테러정보의 수집 및 전파

작성중점

- ➡ 각 기관별 실정에 맞게 정보 ·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집된 테러정보를 유관기관 · 지자체 · 공공기관 및 시설소유자에게 전파하는 체계를 구축(이와 함께 민간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정보 · 수사기관에 전파하는 체계 또한 구축)
- ➡ 테러정보의 수집 및 전파를 위한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작성(서식1 참조)

작성예시

1) 테러정보 수집 · 전파 체계



2) 국·내외 정보 수집

- 국정원, 경찰청, 법무부(출입국), 관세청 등 정보·수사기관과 대테러센터 등을 통해 국내외 테러 정보 수집
- 민간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지역주민 등을 통해 테러 의심사항 정보 수집
- 테러취약 지역 및 시설의 경우 관계자·주민 등의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 신고 유도

3) 정보분석 및 전파

-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테러정보 입수 즉시 지자체, 산하 및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에 전파하고 공동 대응 실시
- 민간으로부터 테러 의심사항 정보 입수 즉시 정보·수사기관에 전파하고, 진위 여부 파악을 요청하며 필요시 즉각 대응

3 긴급대응 체계

가. 테러경보 단계별 임무 및 역할

작성중점

- ☛ 테러경보 수준(관심, 주의, 경계, 심각)에 따라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확인, 초동조치 태세유지, 대테러 점검강화, 의료기관 준비 등 기관 실정을 고려하여 조치해야 할 임무 및 역할 작성

※ 테러경보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테러 위험 징후를 포착한 경우 테러경보 발령의 필요성, 발령 단계, 발령 범위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테러센터장이 발령 (현재의 테러경보는 대테러센터 누리집(nctc.go.kr) 메인화면에서 상시 확인 가능)

작성예시

가. 테러경보 판단기준

단 계	판 단 기 준	비 고
관심 (Blue)	- 우리나라 대상 테러위험 첩보 입수 - 국제테러단체 · 분자의 활동 증가로 국제테러 빈발 - 동맹 · 우호국가에서 대형테러 발생 - 우리 국민이 다수 참가하는 국제경기 · 행사의 테러위험수준 고조	테러징후 감시활동
주의 (Yellow)	- 우리나라 대상 테러위험 첩보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국제테러단체 · 분자의 우리나라 포함 다수국가 대상 공개 테러위협 - 국제테러단체 또는 연계혐의자의 국내잠입 기도 입수 - 재외국민 · 공관 및 외국의 우리 시설에 대한 테러징후 포착 - 국외에서 발생한 테러로 인해 우리 국민 · 시설의 간접피해 발생 -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 중요행사 개최 D-7	협조체계 가동
경계 (Orange)	- 국제테러조직 · 분자의 우리나라 직접 지목, 공개 테러위협 - 우리나라 대상 구체적 테러첩보 입수 - 국제테러조직 · 분자의 국내잠입 및 활동 징후 포착 - 국내에서 대량의 폭발물 · 총기 · 화생방 물질 등 테러 수단 적발 - 국외에서 우리나라와 직접 관련된 대규모 테러 발생 - 국내에서 개최되는 중요 국제행사 개최 3일전	대비태세 점검
심각 (Red)	- 국내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기도 적발 - 우리나라 대상 명백하고 중대한 테러첩보 입수 - 국내에서 테러이용 무기류 도난 · 강탈사건 발생 - 국가 중요행사 관련 직 · 간접 테러첩보	즉각 대응태세 돌입

나. 테러경보에 따른 부서별 임무·역할

- ➡ **1단계(관심)** : 테러위험 수준은 낮으나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단계
- ➡ **2단계(주의)** :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테러위험 징후가 나타나는 단계
- ➡ **3단계(경계)** : 테러위험이 현저하여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단계
- ➡ **4단계(심각)** : 테러위험이 심각한 수준으로 테러발생이 임박하거나 테러가 발생한 단계

구분	1단계	관심	2단계	주의
○○과	- 테러 첩보 접수·전파 등 감시활동 - 테러 대비·대응 계획 및 매뉴얼 현행화 - 테러 위기경보 발령 상황 보고 및 전파 - 테러 발생 시 초동조치 대비태세 유지 - 비상시 대피 지원계획 점검 및 훈련		- 관심단계 조치사항 지속 이행 - 테러 대비·대응 계획 및 매뉴얼 시행 준비 - 관계기관 협조 및 상황접수, 전파체계 점검 - 테러 위기경보 발령 상황 보고 및 전파 - 상황실 정비 및 각종 상황판 등 준비사항 확인 - 테러 첩보 접수·전파 활동강화	
○○과	- 다중이용시설 현황 파악 - 기관별 소관분야 테러 감시활동 유지 - 다중이용시설 테러 의심인물 및 물품 검색체계 유지 - 테러대상·취약 시설 대테러 샘플링 점검		- 다중이용시설 현황 파악·점검 - 다중이용시설 보안검색 강화 -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 - 테러 이용 가능 물질 유통실태 점검 및 감시체제 강화	
○○과	- 소속직원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지 - 외국 정부기관과 정보 공유체계 유지 - 본부·소속기관 비상연락망, 당직근무체계 유지 - 주요 직위자 비상소집 체제 유지		- 본부·소속기관 비상연락망, 당직근무체계 점검 - 관계기관 협조체제 가동 및 대비태세 자체점검 - 국내 개최 국제행사 대테러·안전 활동 강화 - 테러 발생 시 초동조치 대비태세 점검 - 비상시 대피 지원계획 점검 및 훈련	
○○과	- 테러 대비 비축물자 등 파악·유지 - 비축 및 복구물자 제공업체 연락망 유지 - 응급의료기관 지원 준비 유지		- 테러 대비 비축물자 등 파악 - 비축 및 복구물자 제공업체 연락망 확인·점검 - 응급의료기관 지원 유지 및 점검	

구 분	3단계	경 계	4단계	심 각
○○과	- 주의단계 조치사항 지속 시행 - 테러 위기경보 발령 상황 보고 및 전파 - 상황실 정비 및 각종 상황판 등 준비 - 테러 첩보 접수 · 전파 등 감시활동 강화 - 테러사건대책본부(지원본부) 가동준비 - 관계기관 협조 및 상황접수, 전파체계 점검		- 경계단계 조치사항 지속 이행 - 상황실 정비 및 각종 상황판 배치 준비 - 테러상황 실시간 접수 및 전파 - 테러 유형별 사건대책본부 및 대응지원본부 설치 등 대응활동 준비 - 필요시 대테러 부대 (군 · 경찰 · 화생방부대) 출동 - 테러 위기경보 발령 상황 보고 및 전파	
○○과	- 테러 이용수단 및 시설 대테러 점검 - 테러이용 가능수단 유통 통제 - 테러대상시설 경비인력 증원 배치 및 출입통제 강화 - 테러 발생 시 초동조치 즉시 지원 준비 - 다중이용시설 신원확인 철저 및 반입물품 검색비율 상향		- 다중이용시설 현장점검 및 테러대응 강화 - 필요시 테러대상시설의 잠정 폐쇄 및 교통 · 운송수단 통제 - 테러이용수단 유통 통제 및 감시체계 강화 - 테러 이용수단 및 시설 대테러 점검 - 테러 초동대응반 및 조치반 즉시 가동 준비	
○○과	- 소속직원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확인 점검 - 관계기관 대테러상황실 가동 - 대테러 관련 직원 24시간 비상대기태세 유지 - 본부 및 소속기관 당직근무 이행 준비 - 주요 직위자 비상소집 준비 - 비상시 대피지원계획 이행 준비		- 소속직원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 - 관계기관 협조 및 상황접수, 전파체계 가동 - 관계기관 테러대응태세 총력 가동 - 테러 대응에 필요한 장비 · 인력가동 및 현장배치 - 본부 · 소속기관 비상근무 발령 및 복무지침 시달 - 주요 직위자 비상소집 및 복무지침 시달 - 비상시 대피지원계획 이행 준비	
○○과	- 테러 대비 비축물자 등 점검 - 비축 및 복구물자 제공업체 연락망 점검 - 응급의료기관 지원 유지 및 점검		- 테러 대비 비축물자 등 즉시 투입 준비 - 응급의료기관 지원 태세 유지 - 장례지원, 재난구호 등 사후지원활동 준비 - 의심환자 관리 및 지역내 의료자원 추가 확보	

나. 대테러 긴급대응 자체조직 구성·운영

작성중점

- ▶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주관기관*에서는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4조)하고, 대책본부의 장은 테러가 발생한 경우 사건 현장의 대응 활동을 총괄하기 위하여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5조)

* 외교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중 해당 테러사건 주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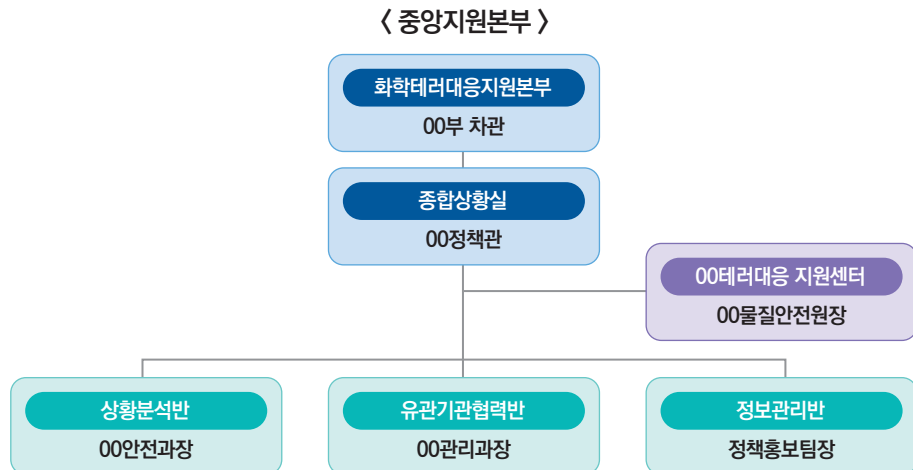
- ▶ 그 외의 관계기관에서는 테러사건대책본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긴급대응 자체조직을 구성·운영
- ▶ 대테러종합체계도(별지1)를 참고하여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중앙 지원본부, 현장 지원본부, 신속대응반 등 편성·운영(필요시)
- ▶ 테러사건대책본부 및 현장지휘본부의 주관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확인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임무와 역할 작성
- ▶ 인명구조 및 구급·화재진압 등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건은 재난관리체계를 동시 적용

* 초동조치 과정에서 테러로 판단될 경우 유형별 사건 주관기관에서 '테러사건대책본부' 즉시 운영, 정보·수사·2차 피해 대응 등과 연계하여 임무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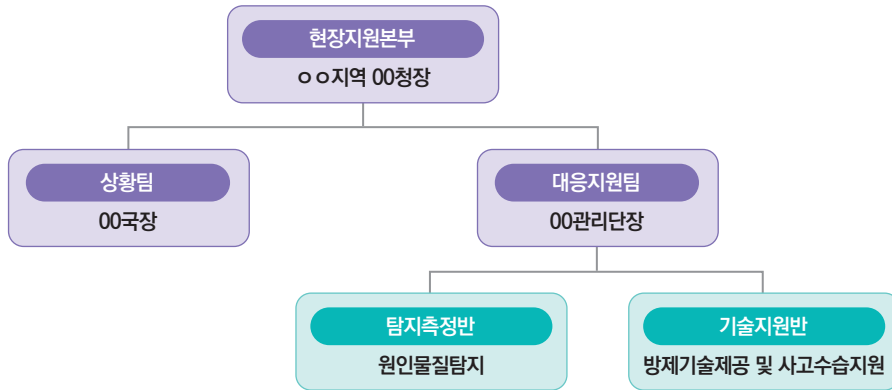
작성예시

대테러 긴급대응 자체조직 구성·운영

● 조직구성(화학테러 예시)



〈 현장지원본부 〉



● 주요임무

- 테러사건 현장상황 파악, 보고 · 전파, 사후처리
- 테러사건대응 현장 지원활동에 대한 지휘 및 통제
- 전문인력 파견 등 현장지원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요청
- 테러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초기대응 지원 및 상황전파
- 대테러활동 현장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행(피해가족 지원사항 포함)
- 현장지휘본부 대응활동 지원
- 주민보호조치 및 피해확산 방지 활동 등 지원

● 운영

- 운영시기 : 국내 ---시설에 대한 테러사건 발생 또는 발생징후 시
- 설치장소 : ---상황실에 설치

* 피해규모와 상황 등에 따라 현장지원본부장이 설치장소, 당직운영 방식 등을 조정

● 반별 사무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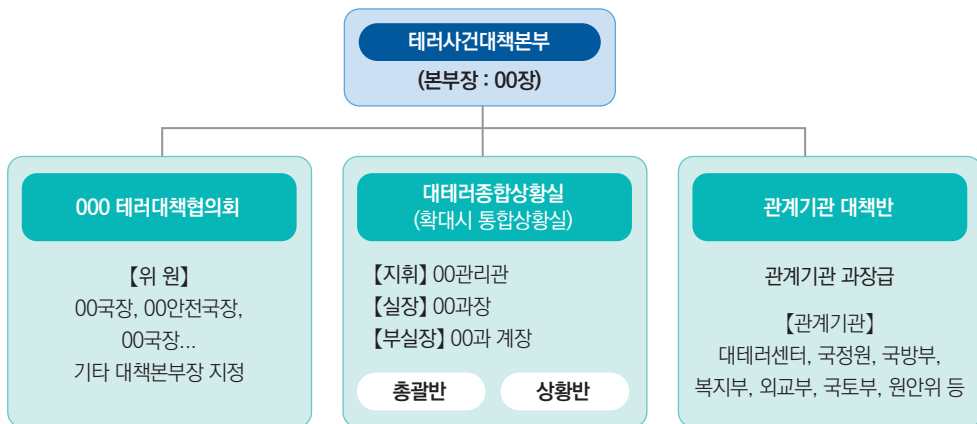
구 분	임 무
상황반 (000과)	• 상황실 정비 및 각종 상황판 등 준비사항 확인 • 테러 현장상황 파악, 접수 및 전파 • 필요시 대테러 부대(군 · 경찰 · 화생방부대) 출동 요청 • 현장 관계기관 테러대응 지원요청 • 테러 유형별 사건대책본부 및 대응지원본부 설치 등 대응활동 준비 • 테러 대비 · 대응 계획 및 현장매뉴얼 점검 • 관계기관 협조 및 전파체계 유지

구분	임무
지원반 (000과)	- 테러 대응에 필요한 장비·인력가동 및 현장배치 - 필요시 테러대상시설의 잠정 폐쇄 및 교통·운송수단 통제 - 비상시 대피계획 점검 및 훈련 - 테러이용수단 및 시설 대테러 점검
관리반 (000과)	- 테러 발생 시 소속직원 비상연락망 확인 - 테러관련 소속·유관·대외기관 비상연락망 점검 - 다중이용시설 현황 파악 - 테러 위기경보 발령 상황 보고 및 전파 - 지원본부 및 소속기관 비상근무 발령·복무지침 시달 - 주요 직위자 비상소집 체제 유지 및 점검 - 테러 발생 시 초동대응반·위기초치반 구성 및 운영
복구반 (000과)	- 응급의료기관 지원 태세 유지 - 장례지원, 재난구호 등 사후지원활동 업무점검 - 가족지원 대책 수립, 피해가족 지원 총괄관리 - 의심환자 관리 및 지역 내 의료자원 추가 확보 - 테러 대비 비축물자 등 파악 - 비축 및 복구물자 제공업체 등 연락망 확인

* 주요 임무, 운영, 반별 사무분장 등은 중앙·현장 지원본부 등의 역할에 따라 구분 작성

참 고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경찰청 소관)

1) 테러사건대책본부



● 일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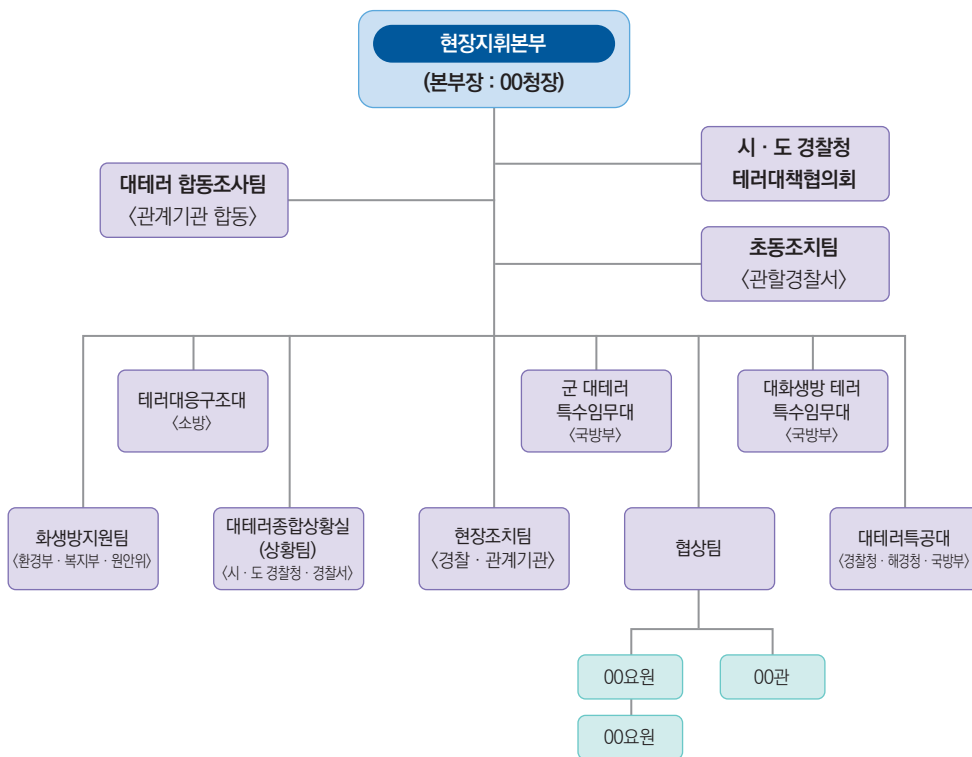
- 대책본부장 : 00장
- 설치시기 : 국내 일반테러 사건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 설치방법 : 00과장 건의 또는 00협의회 심의로 00청장이 설치
- 설치장소 : 00상황실 또는 00장이 정하는 장소

● 기능 및 역할

- 테러사건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 전파 및 사후처리
- 현장지휘본부의 사건 대응활동에 대한 지휘 · 통제 및 지원
-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또는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의 개최 건의
- 필요시 관계기관에 인력 · 장비 등 지원요청
- 그 밖에 테러사건 대응에 필요한 사항의 시행

2) 현장지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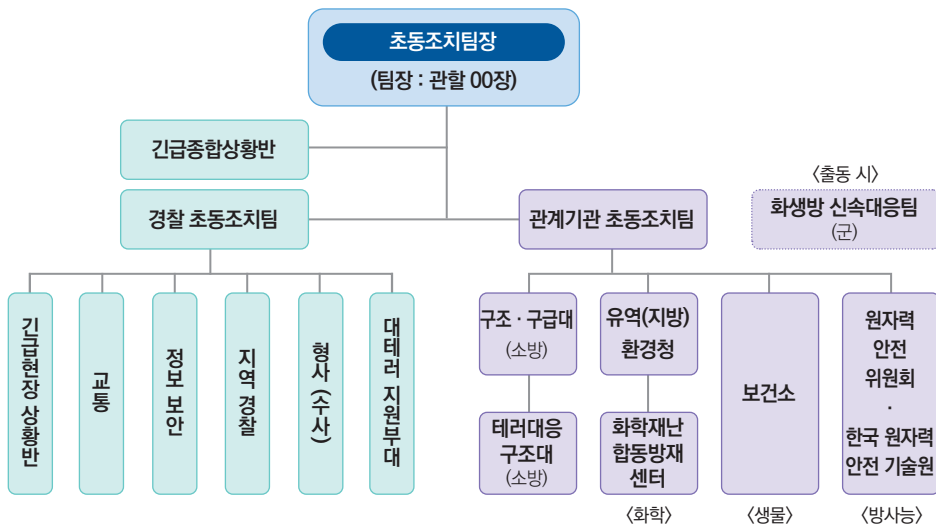
● 일반 사항

- 본부장 : 00장(원칙), 00장이 별도 지명 가능
※ 필요시 00청 00장이 현장지휘본부장의 임무 수행
- 설치시기 : 국내일반 테러사건 중 지속사건 징후 및 발생
※ 비지속 사건이라도 대형사건 수습을 위해 현장지휘본부 설치 가능
- 설치방법 : 00장이 설치
- 설치장소 : 00장이 정하는 장소
※ 현장지휘소 또는 시·도 경찰청 상황실 등 적절한 장소를 활용하여 설치 가능

● 기능·역할

- 테러의 양상·규모·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응활동 총괄
- 특공대, 협상팀, 현장조치팀 운용
- 현장 출동 관계기관 조직 지휘·통제
- 관계기관 지원 요청
- 사건상황 보고 및 유관기관 통보·전파
- 급박한 상황발생 시 진압작전 전개
- 사건현장 보호 및 조사
- 테러범 수사, 인적·물적 피해처리, 사후 대비책 강구

3) 초동조치팀



● 팀 장 : 관할 00장

※ 대책본부 설치 전까지 초동조치 지휘·통제

● 임 무

- 사건 현장의 통제·보존 및 경비강화
- 긴급대피 및 구조·구급
- 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 그 밖에 사건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테러사건 발생 시 비상대피 및 사후처리 대책

가. 비상대피(지원)

작성중점

- ➡ 테러사건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테러사건대책본부 및 소방·경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비상대피 지원계획 마련
- ➡ 테러대상시설을 직접 관리(소유)하는 관계기관은 자체 비상대피계획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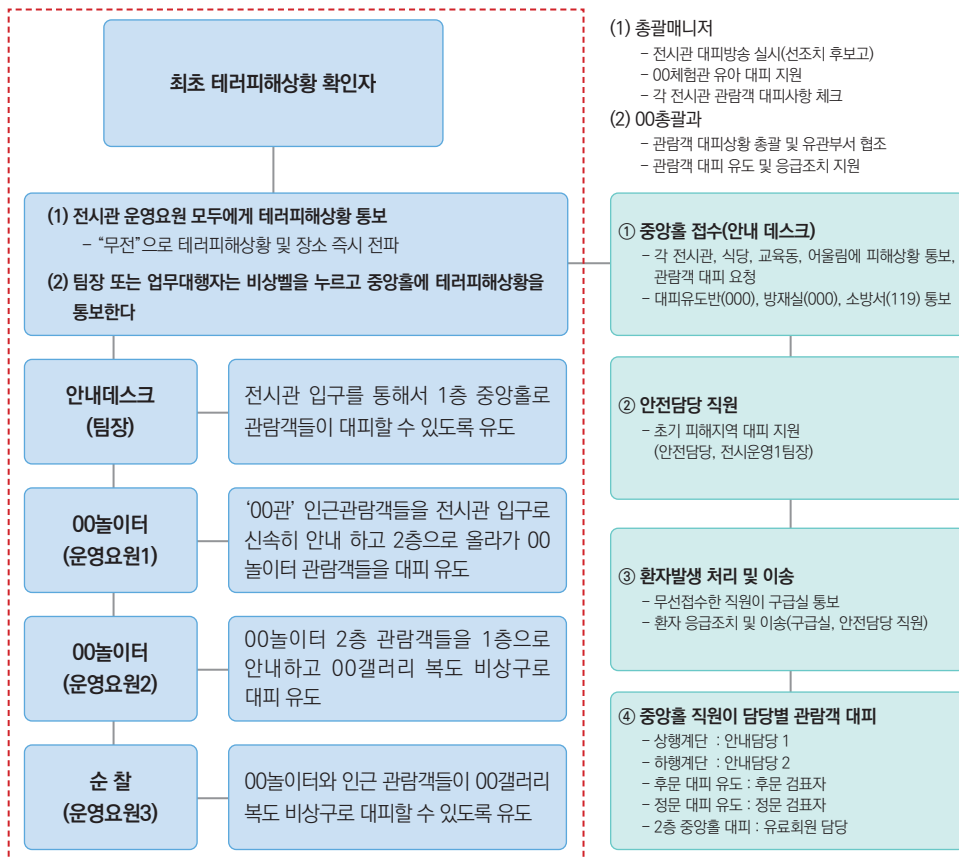
작성예시

- 테러발생 시설 및 인근지역 민간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피유도 및 현장통제 지원
 - 사건현장 보호를 위한 구역 경계선 설치
 - 현장 주변 및 내·외부 출입자 통제
 - 사건현장 및 주변지역에 대한 교통통제, 사상자 후송 등을 위한 교통로 확보 지원
 - 테러 발생시설과 인근지역을 통제할 수 있도록 현장지휘본부(경찰서 등)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통제선 설치 및 출입자 신원확인 등)

● 관람객 비상대피도



● 관람객 비상대피계획



※ 팀장 또는 업무대행자는 관람객 대피 완료 후 전시관 내 관람객 유무를 반드시 최종 확인

나. 긴급 구조·구호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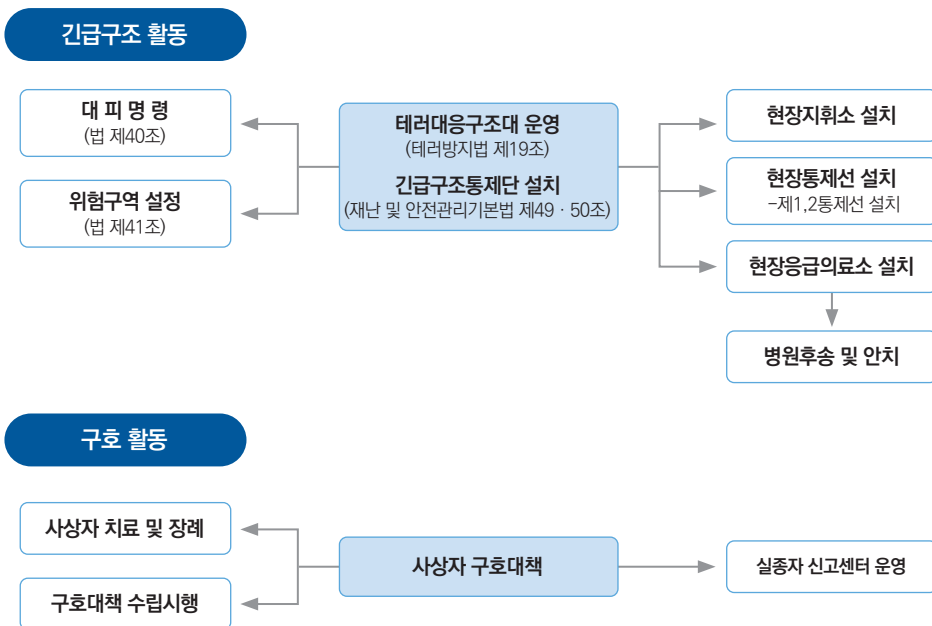
작성중점

- ▶ 테러사건 발생 시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 기관별 긴급구조 및 구난활동 계획을 작성하고, 반별 임무와 역할을 지정(필요시 긴급 구조 및 구호활동 체계 구축)
- ▶ 아래의 ‘테러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상 구조·구급 체계를 참고하여 기관 역할에 맞추어 작성

작성예시

테러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구조·구급 체계

1. 체 계



2. 주요 활동

1)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 테러발생 시 초기단계 조치와 인명의 구조·구급 활동, 화생방테러의 경우 초기단계에서의 오염 확산 방지 및 독성제거 등을 수행하며, 현장지휘본부의 지휘통제에 따름
- 긴급구조통제단과 동일한 조직이 아닐 경우 통제단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구조·구호 활동 등 수행

2)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

- 긴급구조대책의 총괄 조정 및 지휘, 통제
- 긴급구조기관 간의 역할분담 등 공조체제 유지
- 테러대응구조대와 동일한 조직이 아닐 경우 현장지휘본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구조·구호 활동 등 수행

3) 긴급구조활동 현장지휘

- 현장지휘는 시·군·구 통제단장이 실시하되, 필요시 시·도 또는 중앙통제단장이 직접 지휘
- 현장지휘소 및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4) 인력·장비 등 동원명령

- 민방위대원,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 지원기관 등 출동 요청
- 사고현장 인근의 병·의원과 보건소 구급차, 119구급차, 민간구조단체 구급차량 긴급 동원
- 구급차 부족 시는 행정기관 관용차량 동원 활용

5) 주민 긴급대피 조치 등

- 대피명령, 경계구역 설정, 공무원 배치 및 대피유도 등
- 통행자, 입주자, 차량 등 대피조치
- 대피명령 불이행자 또는 긴박한 위험이 있는 지역의 주민에 대한 강제대피 또는 퇴거조치
- 인근 건물·시설 긴급안전점검

3. 반별 임무 및 역할

구분	임무
00반	• • •

다. 수습 및 복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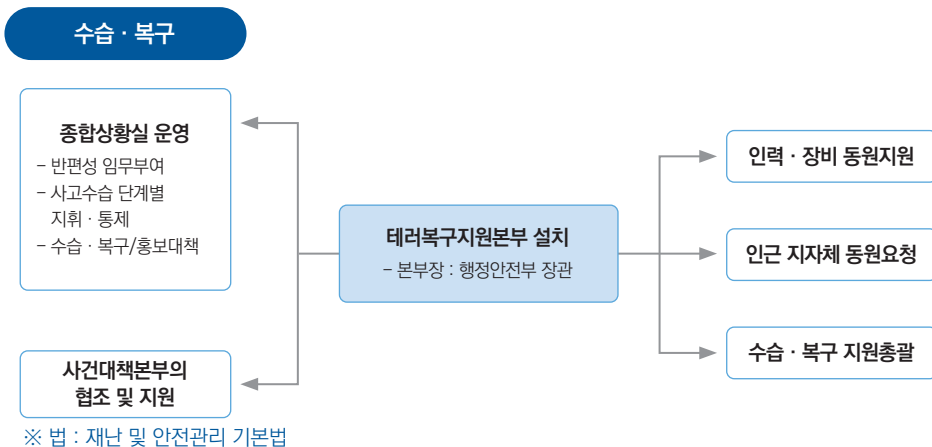
작성중점

- ☛ 테러로 인한 인명 및 시설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각 기관별 실정에 맞는 수습 및 복구계획 작성
- ☛ 반별 임무와 역할을 지정하고, 협조기관 및 연락체계 구축(필요시 복구지원센터 등 설치)
- ☛ 피해가족 지원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지원 대책 수립, 가족대기실 운영, 피해가족 전담자 지정 등
- ☛ 아래의 '테러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상 구조·구급 체계를 참고하여 기관 역할에 맞추어 작성

작성예시

테러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수습·복구 체계

1. 체 계



2. 주요 활동

1) 테러복구지원본부(지자체 등: 복구지원센터) 설치

- 사건대책본부장의 요청이 있거나 사고의 규모 등을 감안, 필요시 테러복구지원본부 즉시 설치·운영
 - 행정안전부, 유관기관, 지자체 관계 공무원 파견 및 필요시 민간 전문가 단체 구성(테러유형·규모에 따라 탄력적 운영)

※ 본부장 : 행정안전부 장관, 부분부장 : 행정안전부 2차관

2) 조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지원

- 진화·수방·방제·방역·방법·급수·긴급통신, 피해시설 응급 복구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 등
- 관계기관에 인접지역 시설의 피해확산 방지 협조 요청 등

3) 테러사건 관계기관 공조체제 유지

- 주관기관 : 테러사건대책본부
 - 경찰청(국내일반테러), 국토교통부(항공테러), 해양경찰청(해양테러), 국방부(군사시설테러), 외교부(국외테러)
- 유관기관 : 주관기관의 활동을 지원·협조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환경부, 보건복지부, 원안위) 등

4) 2차사고 방지

- 사고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시행

5) 주민불편사항 조치 지원

- 사건현장 질서유지, 안전 확보 및 주변도로 교통대책
- 가정(급·배수, 난방 등) 불편사항 해소계획 검토

6) 적십자사,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민간사회단체의 현장봉사 활동 지원

- 피해자 구호, 사고수습·복구 등 지원

7) 사상자 후송 의료기관 선정

3. 반별 임무 및 역할

구분	임무
00반	• • •

라. 사후조치

작성중점

- 사상자 치료 및 장례 등 테러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각 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임무와 역할
- 테러로 인한 신체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사항 안내 방안(테러방지법 제15조, 제16조)
- 테러 발생의 원인 및 취약점을 분석하고 대응체계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테러예방대책을 수정·보완하는 절차 마련, 분석결과는 관계기관에 교육·홍보·전파

작성예시

1. 사상자 치료·장례 등 대책협의 추진

- 사상자 후송상황 확인, 소요 병실 확보 및 의료진 협조 조치
- 병원별로 공무원 배치, 사상자 신원 파악 및 피해자 가족과의 연락, 지원문제 등 협의
- 합동분향소 설치, 합동·개별 장례 여부, 유가족 편의 제공
- 실종자 신고창구 일원화 및 분실물 신고센터 운영 등

2. 테러 재발방지 대책

- 테러 원인, 취약점, 대응체계 문제점 분석
-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운영체계 보완
- 테러 피해자 보상을 위한 지원
 - 테러방지법 피해지원금, 특별위로금 신청 안내

3. 반별 임무 및 역할

구 분	임 무
00반	• • •

5 교육 및 훈련

작성중점

- ▶ 기관별(중앙부처 · 지자체 · 공공기관 · 시설소유자 등을 포함) 대테러 담당자에 대한 교육 · 훈련 세부절차 및 방법 등
- ▶ 대테러 담당자의 위기관리 능력 함양 및 관련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훈련 계획 수립 · 시행(토의형, 도상형, 현장훈련형 등)
 - ※ 하나의 복합건축물에 여러 개의 테러대상시설이 지정된 경우, 각 시설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합동훈련 시행계획 등을 반영
- ▶ 테러대상시설 소유자(관리자)의 대테러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마련 · 시행

작성예시

1. 대테러 담당자 교육 · 훈련 방향

- 담당자의 대테러 활동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테러 예방 · 대비, 대응(사건발생), 수습 · 복구의 단계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확립하여 테러의 사전예방 및 테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도모

2. 교육 · 훈련 대상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대테러 총괄담당자 및 분야별 담당자
- 관할 테러대상시설의 대테러 담당부서 및 담당자

3. 교육 · 훈련 방법

- 방법
 - 테러 총괄 담당자 주관으로 자체 테러대응체계 등에 대한 교육
 - 외부 테러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담당부서 · 소속기관 · 공공기관 · 테러대상시설 담당자)
 - 국내외 대테러 교육 · 홍보 관련 영상매체의 시청 등 시청각 교육자료를 활용한 교육
 - 자체 또는 관계기관 합동 도상훈련, 실제 테러를 가정한 종합훈련 실시
- 교육 · 훈련 시기
 - 자체 교육 : 분기 또는 반기 1회 / 관계기관 합동 교육 : 반기 또는 연 1회
 - 자체 도상훈련 : 분기 또는 반기 1회 / 관계기관 합동 훈련 : 반기 또는 연 1회

- 교육장소 : 교육 · 훈련 상황별 지정
- 교육내용
 - 테러 피해의 심각성과 대응 필요성, 국내외 테러동향 등에 대한 이해
 - 테러 예방 · 대비, 대응, 수습 · 복구의 단계별 기관의 임무와 역할, 협조체계 숙지
 - 대테러 예방활동 및 테러발생 시 긴급대응체계, 비상대피계획 등 이해
 - 테러예방대책의 작성과 적정성 평가 및 이행실태 확인 절차 등

6 언론대응 및 홍보

작성중점

- ➡ 언론대응 및 홍보는 테러사건대책본부에서 전담하되, 필요시 지원본부를 구성하는 관계기관에서 언론 대응 지원(이에 따른 자체실정에 맞는 언론대응 및 홍보계획 마련)

작성예시

1. 홍보 방향

- 테러에 따른 국민 불안감 및 테러발생 시 야기될 수 있는 심리적 공황상태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홍보
- 테러발생 시 대언론 홍보창구 일원화
- 정부의 대응활동에 대한 대국민 협조 · 참여 유도
- 가짜뉴스나 추측성 보도 등으로 인한 여론 악화에 대비, 적극적인 모니터링 · 대응

2. 언론대응 방안

1) 사건대책본부 내 대언론 창구 단일화

- 000을 브리핑 전담자로 지정 운영, 필요시 000이 현장 브리핑 전담자로 000을 지정

2) 대언론 정례 브리핑 실시

- (브리핑 장소) 00부 · 시 · 도 기자실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현장지휘본부 또는 사고현장 인근에서 실시

- (브리핑 시기) 위기상황 접수 후 최단 시간(1시간) 내에 공식 브리핑을 실시하고, 이후 정례 브리핑 전환(1일 2회)

- 필요시 상황추이 및 언론동향 등을 고려하여 추가 브리핑 실시

※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왜곡 및 선정적 보도를 자제하도록 유도

- (브리핑 방법 · 내용) 테러 대응기관 등과 사전협의 후 시행

- 브리핑 내용, 예상 질의 및 답변서를 작성 후 관계기관과 협의
- 질의 · 답변 등에 대해 언론대응 담당자가 숙지하여 일관되게 대응
- 협상 및 작전 등 민감정보 유출 차단

3) 대국민 심리 안정화 도모(수습단계)

- 사건에 의한 부정적인 후속파장 차단 및 최소화
 - TV 및 신문 등 보도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무분별하고 과장된 추측성 보도 자제 유도
 - 언론모니터링 및 필요시 정정보도, 반론 게재 요구
- 정부의 단호한 대테러 대응의지 표명으로 대국민 안정감 제고

4)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 제고(수습단계)

3. 기타

- 현장지휘본부 등에 프레스룸 설치 지원
- 언론 취재구역 설정 및 테러상황실 등 현장 출입통제 철저
 - 사건현장, 테러대책본부 및 현장지휘본부 등 출입통제



대책의 적정성 평가 및 이행실태 확인



III

대책의 적정성 평가 및 이행실태 확인

1 테러예방대책 적정성 평가 및 수준진단

작성중점

- 테러예방대책은 테러 유형·수단 등 양상의 변화, 대상 시설의 변화, 보안장비 등 시스템의 변화, 교육·훈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책이 적정한지 주기적 평가 및 보완
 - ※ 적정성 평가의 최소 주기는 규정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관별 실정에 따라 평가 주기 설정 가능(다만, 시설의 등급 또는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주기를 설정하되, 2년을 넘기지 않는 주기로 설정할 것을 권고)
- 시설관장주무기관은 「테러대상시설 등 안전대책 규정」 제12조에 따른 자체 또는 소속기관 등의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테러예방대책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절차, 주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 「테러대상시설 등 안전대책 규정」 제13조에 따른 수준진단을 시행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과 관련된 점검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테러예방대책 적정성 평가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음을 고려할 것
- 테러예방대책의 적정성 평가는 동 업무편람의 별지2(테러예방대책 적정성 평가표)를 활용·참고

작성예시

1. 평가 대상

- (○○○○도) 관할 00개 시·군별 테러예방대책(위기상황 매뉴얼)
- (시·군) 시·군 소관 테러대상시설별로 수립한 자체 테러예방대책

2. 평가 시기(주기) : A급 시설은 매년, 그 외 기관·시설은 매 2년에 1회 평가

3. 평가 방법

- 시·군별 테러예방대책 또는 테러대상시설별 자체 테러예방대책의 검토·평가(필요시 현장 확인)
- 평가 시 테러예방대책 적정성 평가표(별지 0) 활용·참고
- 수준진단을 병행하는 경우 수준진단표 활용·참고
 - ※ 수준진단표 양식은 대테러센터에서 매년 통보되는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안전관리 수준진단 계획”을 참고

4. 중점 평가내용

- 테러예방대책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적정성 평가표 참고) 반영 여부
- 기관별 · 시설별 여건을 고려한 계획의 충실성 · 구체성의 확인
- 시설 · 구조의 변경, 보안장비 보강 등에 따른 대책의 현행화 여부

5. 기 타

- 전체 대상 기관 · 시설이 주기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연간 평가계획을 연초에 수립

2 테러예방대책 이행실태 확인

작성중점

- ➡ 테러예방대책에 따라 대테러활동을 시행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태를 확인
- ➡ 시설관장주무기관은 자체 또는 소속기관 등의 테러예방대책 이행실태 확인을 위해 절차, 주기, 방법 등 마련
- ➡ 소관 테러대상시설 관할 업무영역에 따라 국가기관은 소속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 단체는 소속 공공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현장점검 등 이행실태 확인을 위한 계획 마련(필요시)
- ➡ 대상 시설에 대한 테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현장지도 등 지원(필요시)
- ➡ 테러예방대책 이행실태 확인표(별지3)를 참고하여 관계기관 실정에 맞는 자체 이행실태 확인표 작성 · 활용

작성예시

1. 확인 대상

- (○○○○도) 관할 00개 시 · 군
- (시 · 군) 시 · 군 소관 테러대상시설(총 00개소)

2. 확인 시기(주기) : 매년

3. 확인 방법

- 시·군별 테러예방대책 또는 테러대상시설별 자체 테러예방대책에 따른 테러예방활동 이행실태의 확인
- 확인 시 테러예방대책 이행실태 확인표(별지 0) 활용·참고
- 각 기관·시설 담당자에 대한 면담 및 현장 확인을 병행

4. 중점 확인내용

- 기관·시설별 테러예방대책에 따라 이행 중인 테러예방활동이 원활한지 여부
- 이전 이행실태 확인 시 식별된 테러 취약요인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 여부
- 담당자의 테러예방대책 및 테러예방활동과 관련한 이해도·숙지도 확인(필요시 현장 교육)
- 이행 중인 테러예방활동 등에 대한 모범사례의 확인(타 시설에 공유·확산) 및 테러 취약요인 발굴·개선

5.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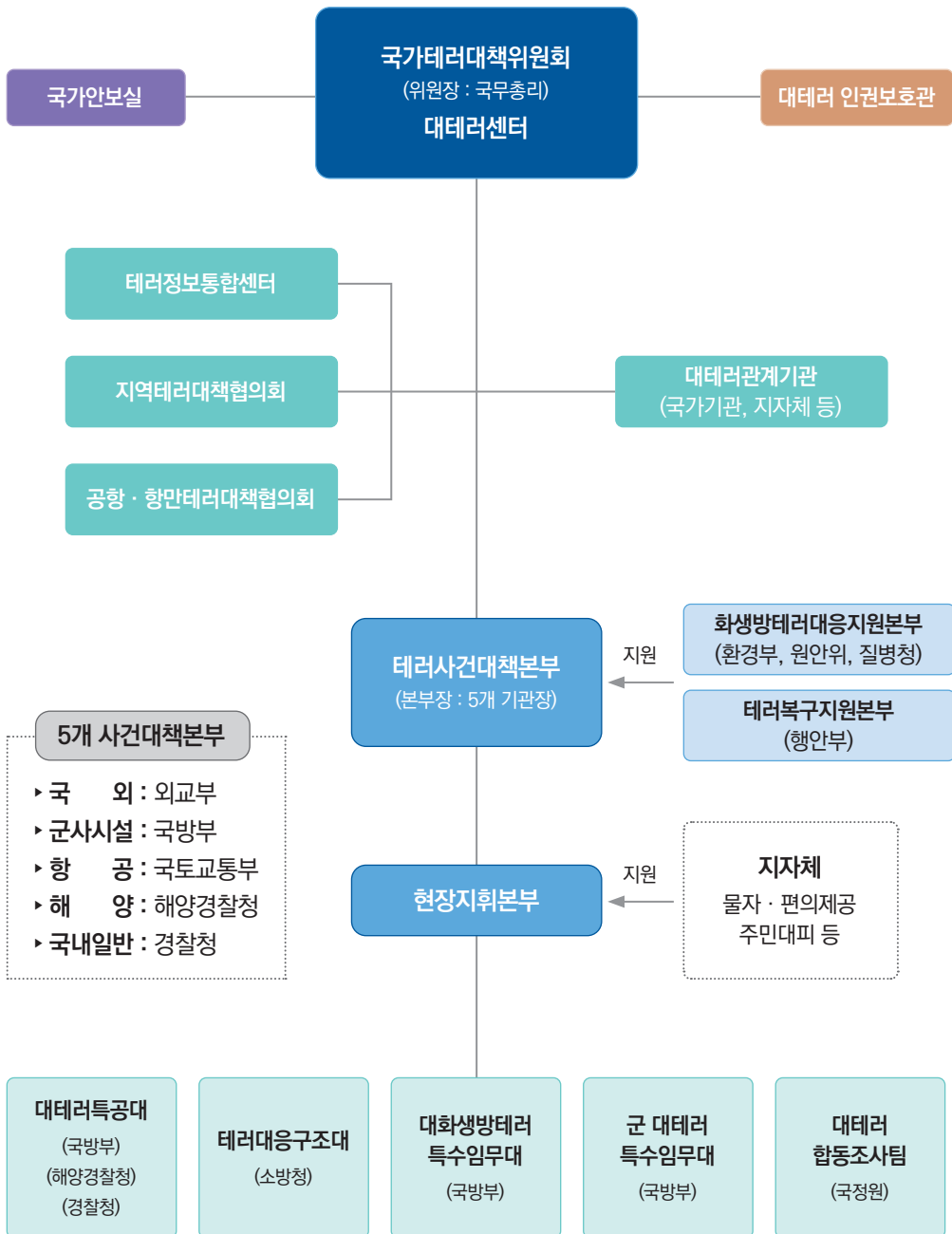
- 매년 초 전체 대상 기관·시설에 대한 연간 이행실태 확인 계획 수립

별 지·서 식



별지 1

대테러 종합체계도



별지 2

테러예방대책 적정성 평가표

◆ 피평가기관 :

◆ 평가기관 :

◆ 평가일 : . . .

평가사항	적정여부	보완사항
1. 기관 특성에 맞는 대테러 활동 추진 목표를 작성하였는가?	ex) ⑤	
2. 「테러방지법」과 개별 관계법령 등을 인용하였는가?		
3. 기관의 소관사무와 대상시설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는가?		
4. 소관 테러대상시설 등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5. 소관 테러대상시설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테러유형을 식별하였는가?		
6. 테러대상시설 등에 대한 출입통제 및 자체 방호계획의 수립 또는 테러대상 시설 등에 대한 자체 방호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지침(참고자료)을 제시하였는가?		
7. 테러 첩보의 입수, 전파체계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였는가?		
8. 테러경보 단계별 부서의 임무와 역할을 지정하였는가?		
9. 테러 긴급대응을 위한 자체 조직을 구축하고, 반별 임무와 역할을 마련하였는가?		
10. 테러 발생 시 대상시설에 대한 자체 비상대피계획 또는 비상대피 지원계획을 마련하였는가?		
11. 테러 발생 시 긴급 구조·구호 계획을 마련하고 반별 임무와 역할을 지정하였는가?		
12. 테러 발생 시 수습 및 복구활동 계획을 마련하고 반별 임무와 역할을 지정하였는가?		
13. 테러 피해자 지원 및 재발방지대책 등 사후조치계획을 마련하였는가?		
14. 관계 공무원, 시설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마련하였는가?		
15. 테러발생 및 수습·복구 과정 등에서 자체 언론대응 및 홍보계획을 마련하였는가?		
16. 기관 특성에 맞는 테러예방대책 적정성 평가계획을 마련하였는가?		
17. 기관 특성에 맞는 테러예방대책 이행실태 확인계획을 마련하였는가?		
18. 그 밖에 테러예방대책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적정여부 선택 기입 : ①매우 미흡 ②미흡 ③보통 ④양호 ⑤매우 양호

별지 3

테러예방대책 이행실태 확인표

◆ 피평가기관 :

◆ 평가기관 :

◆ 평가일 : . . .

확 인 사 항	적정여부	보완사항
1. 자체 테러예방대책을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등과 공유하고 있는가?	ex) ⑤	
2. 지정된 테러대상시설을 유관기관 등에 통보하고, 지정 목록과 현황 자료에 최신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가?		
3. 테러대상시설 등에 대한 자체 출입통제 및 방호계획에 따라 인력·장비 등을 투입하고 실제 운용하고 있는가?		
4. 테러 첩보의 입수 및 전파 체계에 따라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수집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가?		
5. 테러경보 발령에 따라 부서별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6. 간담회나 훈련 등을 통해 긴급대응을 위한 자체조직의 정상 운영을 점검하고 있는가?		
7. 비상대피도 부착 등을 조치하고, 대피유도 및 현장통제 등 비상 시 조치사항 이행을 위한 교육훈련을 이행하고 있는가?		
8. 간담회나 훈련 등을 통해 긴급 구조 및 구호체계를 점검하고, 자료를 수정·보완하고 있는가?		
9. 간담회나 훈련 등을 통해 수급 및 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자료를 수정·보완하고 있는가?		
10. 피해자 지원 체계 및 재발방지대책 등 사후조치 대책에 대하여 훈련·점검을 실시하고 있는가?		
11. 관계 공무원, 시설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12. 자체 언론대응 및 홍보계획을 숙지하고 있는가?		
13. 테러예방대책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는가?		
14. 테러예방대책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는가?		
15. 그 밖에 테러예방대책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적정여부 선택 기입 : ①매우 미흡 ②미흡 ③보통 ④양호 ⑤매우 양호

서식 1

테러 관련 유관기관 연락처

주요기관

기관명	부서명	연락처	비고(FAX)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02-770-2890~5	02-770-4987~90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02-2100-2069	02-2100-2036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	02-572-3023	02-572-5671
경찰청	대테러과	02-3150-1218(주) 02-3150-1234(야)	02-3150-2661(주) 02-3150-3657(야)

소속 및 산하기관

기관명	부서명	연락처	비고(FAX)
000부서			총괄
			00시설

사상자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기관명	부서명	연락처	비고(FAX)
000부서			총괄
			00시설

서식 2

테러대상시설 지정 현황

시설현황

구 분	다중이용시설
근거 법령	• 테러방지법
지정 주체	• 00부
지정 현황	• 00시설 00개소 • 항공기 00기 · 철도차량 000기 · 여객선 00척
비고	•

※ 국가중요시설(국가보안시설)은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 관리

시설별 소관부서

시설구분		소관부서	연락처	비 고
대분류	소분류			
운수시설	철도시설	국토부 00000과	000-000-0000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문화부 00000과	000-000-0000	
여객운송장비	항공기	국토부 00000과	000-000-0000	
여객운송장비	여객선	해수부 00000과	000-000-0000	

서식 3

테러대상시설 현황 (「테러대상시설 등 안전대책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소관 시설 등의 특성에 따라 서식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테러대상시설(다중이용시설) 현황

① 대상시설	시설명:	< 시설 전경 사진 >
	소유자(또는 관리자) 성명:	
	대테러책임자 성명/직책/연락처:	
	관계기관 :	
	시설 소재지(주소):	
② 시설특성	크기(건축연면적 등):	이용객 수:
	시설종류: <i>예시 : 문화집회 시설(공연장)</i>	시설등급:
③ 대테러 활동 현황	대테러 인력 수/ 주 · 야간 근무체계: <i>예시 : 총 인원 00명, 0조0교대(주간), 0조0교대(야간)</i>	제한구역 지정현황: <i>예시 : 총 00개소(000, △△△)</i>
	중앙통제실 근무체계/출입통제 대책: <i>예시 : 총 인원 00명 근무(0조 0교대) 카드키 활용 출입문 통제</i>	순찰현황: <i>예시 : 00명이 00간격으로 00개소를 순찰 (순찰로 : 000 → △△△ 등)</i>
	대테러장비등 보유현황(필요시 붙임 활용 가능): <i>예시 : CCTV 00개소, 경보장치, 금속탐지기 00개, 무전기 00개, 손전등 00개, 소화기 00개</i>	
	특이사항:	
④ 긴급대응 체계	비상대피로 현황: <i>예시 : 총 00개소(000 → △△△ → □□□)</i>	
	경비지원 기관(경찰, 군 등):	

붙임 : 대테러장비 현황 상세

부록(법령·규정)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

[시행 2021. 7. 20.] [법률 제18321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 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1.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중(「항공보안법」 제2조제1호의 운항중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

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다. 선박(「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의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해상구조물(같은 법 제2조제5호의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운항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 (운항 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에 실려 있는 화물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하거나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일으키는 행위

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하거나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1) 기차·전차·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2) 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밖의 시설로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4) 석유, 가연성 가스, 석탄, 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

5)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항공기·선박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

마. 핵물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호의 핵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방사성물질(「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원자력시설(「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2호의 원자력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2) 방사성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3) 핵물질을 수수(授受)·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

- 4)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
2.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3.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
5. “테러자금”이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을 말한다.
6.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의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7. “관계기관”이란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8. “대테러조사”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대책을 강구할 때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③ 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존중하여 이 법을 집행하여야 하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①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③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2.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3.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는 사항

④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대테러센터) ①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1.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2.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배포
3. 테러경보 발령
4.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5. 대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6. 그 밖에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②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 ①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관계기관의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과 효율적 테러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은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0. 6. 9.>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같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①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이하 “테러대상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이하 “테러이용수단”이라 한다),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①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등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①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 「여권법」 제13조에 따른 여권의 효력정지 및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발급 거부를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① 국가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테러에 관한 신고자, 범인검거를 위하여 제보하거나 검거활동을 한 사람 또는 그 친족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②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거나, 테러에 가담 또는 지원한 사람을 신고하거나 체포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테러피해의 지원) ① 테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관계 또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기준·절차·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특별위로금) ① 테러로 인하여 생명의 피해를 입은 사람의 유족 또는 신체상의 장애 및 장기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 기준·절차·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①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
 4.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
- ②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 ⑥ 「형법」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한다.

제18조(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17조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사람은 「형법」 제152조부터 제157조까지에서 정한 형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한다.

- ②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 또는 이를 지휘하는 사람이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제19조(세계주의) 제17조의 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저지른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6. 9.>

부칙 <제18321호, 2021. 7.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2. 11. 1.] [대통령령 제32968호, 2022. 11. 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및 국가테러대책기구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계기관의 범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3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경호처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질병관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2.>

② 법 제5조에 따른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위원 외에 관계기관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법 제6조에 따른 대테러센터(이하 “대테러센터”라 한다)의 장(이하 “대테러센터장”이라 한다)이 된다.

제4조(대책위원회의 운영) ① 대책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대책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개가 필요한 경우 대책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테러대책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대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대책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 및 사전 조정을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테러대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실무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테러센터장이 된다.
- ③ 실무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1항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대테러센터) ① 대테러센터는 국가 대테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대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 ② 대테러센터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대테러 인권보호관

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자격 및 임기)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인권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중 인권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인권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② 인권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③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4. 그 밖에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권보호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인권보호관의 직무 등) ①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관계기관의 대테러정책·제도 관련 안건의 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및 개선 권고
- 2. 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민원의 처리
- 3. 그 밖에 관계기관 대상 인권 교육 등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
- ② 인권보호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계획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인권보호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대책위원회는 인권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정 권고) ① 인권보호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 중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인권보호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의 엄수) ① 인권보호관은 재직 중 및 퇴직 후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② 인권보호관은 법령에 따른 증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전담조직

제11조(전담조직) ① 법 제8조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은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이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전문조직(협의체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2.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3. 테러사건대책본부
4. 현장지휘본부
5.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6. 테러복구지원본부
7. 대테러특공대
8. 테러대응구조대
9. 테러정보통합센터
10. 대테러합동조사팀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조직 외에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테러업무를 수행하는 하부조직을 전담조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역 테러대책협의회)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해당 지역에 있는 관계기관 간 테러예방활동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

②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의 해당 지역 관할지부의 장(특별시의 경우 대테러 센터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7. 26., 2018. 8. 21., 2022. 11. 1.>

1. 시·도에서 대테러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나급 상당 공무원 또는 3급 상당 공무원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
2. 법무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검찰청·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지역기관에서 대테러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나급 상당 공무원 또는 3급 상당 공무원 중 해당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지역 관할 군부대 및 국군방첩부대의 장
4.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의 지역기관에서 대테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및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나 경비·보안 책임자

③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시행 방안
2. 해당 지역 테러사건의 사전예방 및 대응·사후처리 지원 대책
3. 해당 지역 대테러업무 수행 실태의 분석·평가 및 발전 방안
4. 해당 지역의 대테러 관련 훈련·점검 등 관계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당 지역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사항

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결과를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에 통보하고,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 대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의 회의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3조(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① 공항 또는 항만(「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서의 관계기관 간 대테러활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항·항만별로 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

②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은 해당 공항·항만에서 대테러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정보원 소속 공무원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7. 26., 2018. 8. 21., 2020. 12. 22., 2022. 11. 1.>

1. 해당 공항 또는 항만에 상주하는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관세청·경찰청·소방청·질병관리청·해양경찰청 및 국군방첩사령부 소속기관의 장
2. 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소유자 및 경비·보안 책임자
3. 그 밖에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장

③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는 해당 공항 또는 항만 내의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시행 방안
2. 공항 또는 항만 내 시설 및 장비의 보호 대책
3. 항공기·선박의 테러예방을 위한 탑승자와 휴대화물 검사 대책
4. 테러 첩보의 입수·전파 및 긴급대응 체계 구축 방안
5. 공항 또는 항만 내 테러사건 발생 시 비상대응 및 사후처리 대책
6. 그 밖에 공항 또는 항만 내의 테러대책

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결과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에 통보하고,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 대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항·항만별로 테러대책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4조(테러사건대책본부) ①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국외테러의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테러사건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외교부장관: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
2. 국방부장관: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
3. 국토교통부장관: 항공테러사건대책본부
4. 삭제 <2017. 7. 26.>
5. 경찰청장: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
6. 해양경찰청장: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

②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사건에 2개 이상의 대책본부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테러사건의 성질·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를 설치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의 장은 대책본부를 설치하는 관계기관의 장(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의 경우에는 합동참모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며, 제15조에 따른 현장지휘본부의 사건 대응 활동을 지휘·통제한다.

④ 대책본부의 편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

제15조(현장지휘본부) ① 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 현장의 대응 활동을 총괄하기 위하여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대책본부의 장이 지명한다.

③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테러의 양상·규모·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협상·진압·구조·구급·소방 등에 필요한 전문조직을 직접 구성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장지휘본부의 장이 요청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현장에 출동한 관계기관의 조직(대테러특공대, 테러대응구조대,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및 대테러합동조사팀을 포함한다)을 지휘·통제한다.

⑤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현장에 출동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통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등) ① 환경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질병관리청장은 화생방테러사건 발생 시 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로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0. 12. 22.>

1. 환경부장관: 화학테러 대응 분야
2.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능테러 대응 분야
3. 질병관리청장: 생물테러 대응 분야

②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1. 5.>

1. 화생방테러 사건 발생 시 오염 확산 방지 및 독성제거(除毒) 방안 마련
2. 화생방 전문 인력 및 자원의 동원·배치
3. 그 밖에 화생방테러 대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시행

③ 국방부장관은 관계기관의 화생방테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염 확산 방지 및 독성제거 임무 등을 수행하는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④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및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관계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7조(테러복구지원본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테러사건 발생 시 구조·구급·수습·복구 활동 등에 관하여 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테러복구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테러복구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테러사건 발생 시 수습·복구 등 지원을 위한 자원의 동원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
2. 대책본부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테러복구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시행

제18조(대테러특공대 등) ①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테러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대테러특공대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 7. 26.>

②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테러특공대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대테러특공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대한민국 또는 국민과 관련된 국내외 테러사건 진압
2. 테러사건과 관련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3. 주요 요인 경호 및 국가 중요행사의 안전한 진행 지원
4. 그 밖에 테러사건의 예방 및 저지활동

④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의 출동 및 진압작전은 군사시설 안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에 대하여 수행한다. 다만, 경찰력의 한계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여 대책본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군사시설 밖에서도 경찰의 대테러 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군 대테러특공대의 신속한 대응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군 대테러특수임무대를 지역 단위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대테러특수임무대의 편성·운영·임무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테러대응구조대) ①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는 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구급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 7. 26.>

② 테러대응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1. 5.>

1. 테러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조치 및 인명의 구조·구급
2. 화생방테러 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오염 확산 방지 및 독성제거
3. 국가 중요행사의 안전한 진행 지원
4. 테러취약요인의 사전 예방·점검 지원

제20조(테러정보통합센터)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테러정보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 분석 및 관계기관에의 배포
2. 24시간 테러 관련 상황 전파체계 유지
3. 테러 위험 징후 평가
4. 그 밖에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과 테러정보의 통합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대테러합동조사팀)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내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할 때 또는 테러 첩보가 입수되거나 테러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예방조치, 사건 분석 및 사후처리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합동조사팀(이하 “합동조사팀”이라 한다)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합동조사팀이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한 경우 그 결과를 대테러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자체 조사팀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자체 조사팀이 조사한 결과를 대테러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테러 대응 절차

제22조(테러경보의 발령) ① 대테러센터장은 테러 위험 징후를 포착한 경우 테러경보 발령의 필요성, 발령 단계, 발령 범위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테러경보를 발령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의 이하의 테러경보 발령 시에는 실무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테러경보는 테러위험의 정도에 따라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의 4단계로 구분한다.

③ 대테러센터장은 테러경보를 발령하였을 때에는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테러경보 발령 및 테러경보에 따른 관계기관의 조치사항에 관하여는 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상황 전파 및 초동 조치)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 위협 등 그 징후를 인지한 경우에는 관련 상황 및 조치사항을 관련기관의 장과 대테러센터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신속히 다음 각 호의 초동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건 현장의 통제·보존 및 경비 강화
2. 긴급대피 및 구조·구급
3. 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4. 그 밖에 사건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내 일반테러사건의 경우에는 대책본부가 설치되기 전까지 테러사건 발생 지역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초동 조치를 지휘·통제한다.

제24조(테러사건 대응) ① 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상황 전파 및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② 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해외에서 테러가 발생하여 정부 차원의 현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 현지대책반을 구성하여 파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테러사건 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물자 및 편의 제공과 지역주민의 긴급대피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제25조(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 수립)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이하 “테러대상시설”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3. 29.>

1. 국가중요시설: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 및 「보안업무

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2.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이하 “다중이용시설”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장비 중 관계기관의 장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나.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8제1호·제2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 ②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테러이용수단(이하 “테러이용수단”이라 한다)의 제조·취급·저장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원·차량에 대한 출입 통제 및 자체 방호계획
2. 테러 첩보의 입수·전파 및 긴급대응 체계 구축 방안
3. 테러사건 발생 시 비상대피 및 사후처리 대책

- ③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제조·취급·저장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테러예방대책 및 안전관리대책의 적정성 평가와 그 이행 실태 확인
2. 소관 분야 테러이용수단의 종류 지정 및 해당 테러이용수단의 생산·유통·판매에 관한 정보 통합관리

제26조(국가 중요행사 안전관리대책 수립)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국가 중요행사는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행사 중 관계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주관기관, 개최근거,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② 관계기관의 장은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국가 중요행사의 특성에 맞는 분야별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안전대책기구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및 제3항에 따른 대테러·안전대책기구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과 국가원수에 준하는 국빈 등의 경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27조(테러취약요인의 사전제거 지원) ①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관계기관의 장을 거쳐 대테러센터장에게 테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적정성 평가, 현장지도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테러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테러예방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테러취약요인의 사전제거 비용 지원) ① 국가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테러취약요인을 제거한 시설소유자등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용의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1. 테러사건이 발생할 가능성
 2. 해당 시설 및 주변 환경 등 지역 특성
 3. 시설·장비의 설치·교체·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정도 및 시설소유자등의 부담 능력
 4.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적정성 평가와 그 이행 실태 확인 결과
 5. 제27조제1항·제2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 현장지도 결과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가기관의 장이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비용의 한도, 세부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6장 포상금 및 테러피해의 지원

제29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제30조에 따른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체포된 범인을 인도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 또는 국방부검찰단장이나 각 군 검찰단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군검사는 신고를 한 사람이나 범인을 체포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인도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신고 또는 인도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③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예방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등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테러센터장 소속으로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테러센터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되며, 심사위원회 위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 소속 4급 상당 공무원 중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 지급 여부와 그 지급금액
2. 포상금 지급 취소 및 반환 여부
3. 그 밖에 포상금에 관한 사항

⑥ 심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1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1억원의 범위에서 차등 지급한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자등이 테러 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3. 신고자등이 테러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4. 신고자등이 관계기관 등에 신고·체포할 의무가 있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체포를 하였는지 여부
- ②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③ 관계기관의 장은 하나의 테러사건에 대한 신고자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의 범위에서 그 공로를 고려하여 배분·지급한다.
- 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의 경우 포상금을 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합의된 비율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2조(포상금 신청 절차) ① 포상금은 그 사건이 공소제기·기소유예 또는 공소보류되거나 관계기관의 장이 제29조제3항에 따라 추천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 ② 검사 또는 군검사는 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등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 ③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
 2. 제2항 또는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서
 3. 공적 자술서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은 제2항 또는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⑤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자 전원의 연서(連署)로써 청구하여야 한다.

제33조(포상금 지급 절차) ① 관계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결정 통지서를 보내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4조(포상금 지급 취소 및 반환) ① 관계기관의 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포상금 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1. 포상금 수령자가 신고자등이 아닌 경우
2. 포상금 수령자가 테러사건에 가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고자 등에게 그 취소 사실과 포상금의 반환 기한,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5조(테러피해의 지원)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하 “피해지원금”이라 한다)은 신체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으로 한다.

② 테러로 인한 신체 피해에 대한 치료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치료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신체적 부상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2. 정신적·심리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③ 테러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한 복구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사회

재난 피해 지원의 기준과 금액을 고려하여 대책위원회가 정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치료비와 제3항에 따른 복구비는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지원금의 한도·세부기준과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가 정한다.

제36조(특별위로금의 종류)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유족특별위로금: 테러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 장애특별위로금: 테러로 인하여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경우. 이 경우 신체상 장애의 기준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장애의 기준을 따른다.
 3. 중상해특별위로금: 테러로 인하여 장기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이 경우 장기치료가 필요한 피해의 기준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중상해의 기준을 따른다.
- ②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특별위로금(이하 “유족특별위로금”이라 한다)은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맨 앞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특별위로금(이하 “장애특별위로금”이라 한다) 및 제1항제3호에 따른 중상해특별위로금(이하 “중상해특별위로금”이라 한다)은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제37조(특별위로금의 지급기준) ① 유족특별위로금은 피해자의 사망 당시(신체에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장애특별위로금과 중상해특별위로금은 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장애 또는

중상해의 정도와 부양가족의 수 및 생계유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등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피해자의 근무기관의 장의 증명이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증명에 따른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피해자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으로 본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로금의 세부기준·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가 정한다.

제38조(특별위로금 지급에 대한 특례) ① 장해특별위로금을 받은 사람이 해당 테러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특별위로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유족 특별위로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특별위로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중상해특별위로금을 받은 사람이 해당 테러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유족특별위로금 또는 장해특별위로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유족특별위로금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특별위로금에서 이미 지급한 중상해특별위로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9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① 법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피해지원금 또는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신청서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피해지원금 또는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인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사람이 둘 이상이면 같은 순위의 사람이 합의하여 신청인 대표자를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인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총리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맨 앞 순위인 유족 1명

2. 생존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생존한 피해자(생존한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을 포함한다)

③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의 지급 신청,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 지급 청구 또는 수령 등을 직접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금 또는 특별위로금의 지급 신청을 받으면 그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하고 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제2항에 따른 신청인 대표자, 제3항에 따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결정) ①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은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계기관의 장은 대책위원회가 피해지원금 또는 특별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120일”은 “60일”로 본다.

제41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제한)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금액을 줄여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① 제40조제1항에 따라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피해지원금 또는 특별위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 및 신청서
2. 인감증명서(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말한다)
3. 입금계좌 통장 사본

②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은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이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 및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9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환수)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은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테러사건에 가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제44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테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를 입은 사람의 유족 또는 신체상의 장애 및 장기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테러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 복구비, 특별위로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그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치료비·복구비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장 보칙

제4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테러피해의 지원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

부칙 〈제32968호, 2022. 11. 1.〉 (국군방첩사령부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군사안보지원부대”를 “국군방첩부대”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군방첩사령부”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6. 6. 4.] [총리령 제1281호, 2016. 6. 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법무부, 경찰청
2. 제1호 외에 해당 사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
3. 국가정보원
4. 그 밖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대테러센터(이하 “대테러센터”라 한다)의 장(이하 “대테러센터장”이라 한다)이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포상금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테러센터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테러센터장이 지명한다.
-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회의 안전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제4조(포상금의 신청 절차)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영 제32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결정 기간 등) ①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포상금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6조(포상금의 반환통지 등) ① 관계기관의 장은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반환 통지서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서는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에게 직접 주거나 배달증명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을 관계기관의 장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치료비 산정) ① 영 제35조제2항 각 호의 치료비(이하 “치료비”라 한다)는 피해자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제외한다.

②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기준으로 하며, 피해자가 「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의료 급여기금에서 부담한 급여비용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③ 치료비는 피해자 1명당 연 1천500만원, 총 5천만원의 한도에서 지원한다. 다만, 해당 테러 사건의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치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본문 및 제3항 본문·단서에도 불구하고 테러피해의 경위, 정도 및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국가 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5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2. 연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3. 총 5천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4. 해당 테러사건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비

제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특별위로금(이하 “유족특별

위로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녀
2.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서 태아는 피해자가 사망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유족특별위로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사람 사이에서는 해당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며,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족은 유족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2.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가 사망하면 유족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3. 피해자가 사망한 후 유족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제9조(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 ① 영 제37조에 따른 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된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피해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월평균액으로 한다.

② 영 제37조에 따라 특별위로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이 제10조에 따른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특별위로금액을 정한다.

제10조(평균임금의 기준) ① 영 제37조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

임금에 따른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 임금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임금은 먼저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에 따르고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가 없을 때에는 정부노임단가 통계에 따르며, 정부노임단가 통계도 없을 때에는 공신력 있는 방법으로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제11조(유족특별위로금의 금액) ① 유족특별위로금의 산정에서 피해자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월급여등”이라 한다)에 곱하는 “총리령으로 정한 개월 수”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에 일정한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에 곱하는 일정한 배수에 관하여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4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별표 중 “제22조제1호”는 “제11조제1항제1호”로, “제22조제2호”는 “제11조제1항제2호”로, “제22조제3호”는 “제11조제1항제3호”로, “법 제18조제1항제3호”는 “제8조제1항제3호”로, “구조피해자”는 “피해자”로 각각 본다.

1. 제8조제1항제1호의 유족: 40개월
2. 제8조제1항제2호의 유족: 32개월
3. 제8조제1항제3호의 유족: 24개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족특별위로금액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장해특별위로금의 금액) ①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장해특별위로금(이하 “장해특별위로금”이라 한다)의 산정에서 피해자의 월급여등에 곱하는 “총리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해등급별 개월 수에 일정한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해등급별 개월 수에 곱하는 일정한 배수에 관하여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5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별표 중 “범죄행위”는 “테러사건”으로, “구조피해자”는 “피해자”로 각각 본다.

1. 1급: 40개월
2. 2급: 36개월
3. 3급: 32개월
4. 4급: 28개월

5. 5급: 24개월

6. 6급: 20개월

7. 7급: 16개월

8. 8급: 12개월

9. 9급: 8개월

10. 10급: 4개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특별위로금액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중상해특별위로금의 금액) ①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중상해특별위로금(이하 “중상해 특별위로금”이라 한다)의 산정에서 피해자의 월급여등에 곱하는 “총리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등에 의하여 해당 중상해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에 일정한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하며, 해당 중상해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에 곱하는 일정한 배수에 관하여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5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별표 중 “범죄행위”는 “테러사건”으로, “구조피해자”는 “피해자”로 각각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상해특별위로금액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진단서 등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일(日) 단위인 경우 30일을 1개월로 환산한 비율로 개월 수를 정한다.

④ 제1항의 진단서 등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주(週) 단위인 경우 일 단위로 환산한 후 제2항의 방법에 따른다.

제14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금 및 특별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피해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4호서식의 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의료기관이 발행한 계산서 및 영수증을 첨부 한다) 또는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의료비 청구서

3. 향후 치료비 또는 후유장해 등에 따른 장래의 소득 또는 수익의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향후치료비 추정서 또는 후유장해진단서
 4.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인 대표자 선정서(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 대표자를 선임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5. 별지 제6호서식의 위임장(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6.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근로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 소득자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7.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사업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소득자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8. 별지 제7호서식의 재산피해명세서 및 테러사건으로 인한 재산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9. 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② 영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인 대표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제15조(지급 결정 통지서 등 서식)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급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 및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부칙 〈제1281호, 2016. 6. 1.〉

이 규칙은 201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4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규정

제정 2019. 7. 8.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규정 제1호
 일부개정 2021. 7. 30.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규정 제4호
 일부개정 2022. 7. 22.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규정 제5호

제1조(목적)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5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러대상시설”이란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테러대상시설을 말한다.

1의2. “테러이용수단”이란 법 제10조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물질관리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을 말한다. 또한 테러의 수단으로 이와 동등하게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1의3. “테러이용수단 시설”이란 테러이용수단의 제조·취급·저장 시설을 말한다.

2. “안전대책”이란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이용수단의 제조·취급·저장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말한다.

3. “시설관장국가기관”이란 개별 법령에 따라 소관 시설·장비 등을 총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4. “시설관장주무기관”이란 개별 법령에 따라 소관사무의 직무권한 범위에 있는 시설·장비 등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관련기관을 말한다. 다만, 권한을 위임·위탁한 경우에는 수임·수탁기관을 말한다.

5. “신규지정 등”이란 다중이용시설을 테러대상시설로 신규 지정, 지정 해제, 등급 변경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수준진단”이란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시설에 대하여 테러취약요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일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측정 및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중이용시설의 테러대상시설 지정 기준) ① 시설관장국가기관의 장이 영 제25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의 테러대상시설 지정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관장국가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지정 기준이 필요한 경우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지정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다중이용시설의 테러대상시설 지정 협의시기) ① 시설관장국가기관의 장은 매년 9월에 제3조의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테러대상시설로 신규지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5조(다중이용시설의 테러대상시설 지정 협의요청) ① 시설관장국가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대테러센터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 지정 시설의 명칭, 용도, 등급, 소재지, 연면적 등 현황
2. 지정 해제 시설의 명칭 및 해제 사유
3. 등급 변경 시설의 명칭 및 변경 사유
4. 관련 관계기관 및 시설소유자 등의 의견

② 대테러센터장은 제3조에 따른 테러대상시설 지정기준에 해당되나 지정 누락 또는 제외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시설관장국가기관의 장에게 테러대상시설 지정 필요성과 관련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토요청을 받은 시설관장국가기관의 장은 해당 다중이용시설이 테러대상 시설로 지정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4조에 따라 지정 협의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다중이용시설의 테러대상시설 지정) ① 대테러센터장은 제5조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검토 결과를 시설관장국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장국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신규지정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관련 관계기관 및 시설소유자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목록 관리) ① 시설관장주무기관의 장은 소관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시설의 현황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장국가기관의 장은 소관 전체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시설의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의 전체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시설의 현황을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설관장국가기관의 장은 소관 전체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시설의 목록을 매년 11월말까지 대테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테러센터장은 제3항에 따라 취합한 목록을 다음 해 1월말까지 관련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대책의 수립) ① 시설관장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관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장국가기관의 장은 소관시설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대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시설관장주무기관의 안전대책에 대한 적정성과 그 이행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복합건축물에 여러 개의 테러대상시설이 지정된 경우에는 관련 시설관장주무기관이 안전대책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복합건축물에 대한 테러 예방활동 및 안전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시설관장주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대책을 공동으로 수립하지 아니한 복합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협의단체 등이 구성된 경우 해당 협의단체 등이 복합건축물에 대한 테러 예방활동 및 안전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협의·지원할 수 있다.

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협의회

2. 각 테러대상시설 소유자 등이 테러 예방 또는 안전관리 등을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단체

3.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구성된 협의단체

⑤ 시설관장주무기관의 장은 안전대책을 변경한 경우 개정이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설관장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안전대책 및 제4항에 따라 변경한 안전대책을 관련 관계기관 및 시설소유자 등에 배포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대책의 통합 작성·관리)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테러방지를 위한 관련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안전대책과 통합하여 작성·관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이견 조정) ① 시설관장주무기관 간에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대테러센터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테러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또는 테러대책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이견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안전대책 수립 지원) 대테러센터장은 안전대책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업무편람 등을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적정성 평가) 시설관장주무기관의 장은 안전대책의 적정성을 별표2의 항목에 따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13조(수준진단) ① 시설관장주무기관의 장은 안전대책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소관 테러 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시설에 대한 수준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대테러센터장은 매년 수준진단 추진방향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관장주무기관의 장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추진방향에 따라 자체 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이행실태 확인) ① 시설관장주무기관의 장은 안전대책의 이행실태를 별표3의 항목에 따라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대책의 이행실태 확인은 국가적 재난 발생, 긴급한 현안 업무의 처리, 기타 시설관장주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시행 주기와 방법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안전점검 등과 병행 실시) ① 시설관장주무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과 관련된 점검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안전대책의 적정성 평가와 그 이행실태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설관장주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안전대책과 그 이행실태 확인을 관련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테러예방활동 지원) ① 대테러센터장은 안전대책의 적정성 평가와 그 이행실태 확인을 위하여 시설관장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컨설팅 등 테러예방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테러센터장은 관련 관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테러센터장은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시설과 관련된 특별한 사건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설관장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동일 유형의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시설에 대한 특별 컨설팅 등 테러예방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설관장국가기관의 장은 지역테러대책협의회에서 의결한 테러예방·사후처리 지원대책 등이 전체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시설에 적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대책 추진방향을 보완하여 관련 시설관장주무기관에 제시할 수 있다.

④ 테러정보통합센터장은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시설의 안전대책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테러 예방정보와 관련 정보의 분석 결과 등을 관계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제17조(후속조치) ① 시설관장주무기관의 장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결과를 관련 관계 기관 및 시설소유자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테러센터장과 시설관장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안전대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과는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시설의 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규정 제4호, 2021. 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에 따른 안전대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해당 테러대상 시설에 「통합방위법」, 「보안업무규정」에 따른방위·보안 관련 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안전 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규정 제5호, 2022. 7.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다중이용시설의 테러대상시설 지정 기준(제3조관련)

다중이용건축물

시설구분		등급	지정 기준
대분류	소분류		
문화 및 집회 시설	공연장 ¹⁾	A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광역시 소재의 관객 2천명 이상 동시 수용 가능한 대형 공연장 • 스크린 15개 이상의 영화관 등
		B	• 관객 1.5천명 이상 동시 수용 가능한 대형 공연장 • 스크린 10개 이상의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
		C	• A·B등급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테러 발생 시 파급영향이 큰 공연장
	집회장 ²⁾	A	• 국제행사 개최 가능 규모의 대형 컨벤션센터 등 집회시설
		B	• A급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대형 컨벤션센터 등 집회시설
		C	• A·B등급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테러 발생 시 파급영향이 큰 집회시설
	관람장 ³⁾	A	• 월드컵 경기장
		B	• 프로축구·야구 경기장 및 관람석 2만석 이상의 실외 경기장 • 관람석 5천석 이상의 실내경기장·체육관
		C	• A·B등급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테러 발생 시 파급영향이 큰 시설
	전시장 ⁴⁾	A	• 일 평균 관람객 1,000명 이상인 전시장
		B	• 일 평균 관람객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전시장
		C	• A·B등급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테러 발생 시 파급영향이 큰 전시장
종교 시설	종교 집회장 ⁵⁾	A	• 바닥면적의 합이 5만㎡ 이상의 종교시설
		B	• 바닥면적의 합이 3만㎡ 이상의 종교시설
		C	• A·B등급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테러 발생 시 파급영향이 큰 종교시설
판매 시설	도·소매 시장, 상점 ⁶⁾	A	• 1일 유동인구 3만 명(단, 서울은 5만명) 이상 백화점·쇼핑몰 등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매장면적 3만㎡ 이상 판매시설 • 1일 유동인구 4만명(단, 서울은 7만명) 이상, 입주점포 150개 이상의 지하상가
		B	• 1일 유동인구 2만명(단, 서울은 4만명) 이상 백화점·쇼핑몰 등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매장면적 1.5만㎡ 이상 판매시설 • 1일 유동인구 3만명(단, 서울은 5만명) 이상, 입주점포 100개 이상의 지하상가
		C	• A·B등급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테러 발생 시 파급영향이 큰 백화점·쇼핑몰·지하상가 등

1)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 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등

2)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등

3) 체육관·운동장에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등

4)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5)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등),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6)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등),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등)

시설구분		등급	지정 기준
대분류	소분류		
운수 시설	여객 자동차 터미널	A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광역시 소재 고속(복합)버스터미널
		B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광역시 소재 주요 시외버스 터미널 • 기타 시·도 주요 고속버스터미널
		C	• A·B등급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테러 발생 시 파급영향이 큰 터미널
	철도 시설	A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광역시 소재 고속철도 역사 • 1일 유동인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0만명(광역시 5만명, 기타 3만명) 이상 환승역사 • 1일 유동인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0만명(광역시 4만명, 기타 2만명) 이상 단독역사 • 대형국제행사장·숙소로 활용되는 주요 호텔 또는 대형 컨벤션센터 주변 역사
		B	• 기타 시·도 고속철도 역사 • 1일 유동인구 수도권 8만명(광역시 3만명, 기타 1만5천명) 이상 단독역사 • A급에 해당하지 않는 주요 환승역사
		C	• A·B등급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테러 발생 시 파급영향이 큰 역사 (1일 유동인구 1천명 미만 제외)
	공항 시설	A	〈삭제〉
		B	• 영 제25조제1항제1호(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항여객터미널
		C	• B등급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테러 발생 시 파급영향이 큰 시설
	항만 시설	A	〈삭제〉
		B	• 영 제25조제1항제1호(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국제여객터미널
		C	• B등급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테러 발생 시 파급영향이 큰 시설
의료 시설 ⁷⁾	종합 병원	A	• 1,5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
		B	• A급에 해당하지 않은 1,0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
		C	• A·B등급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테러 발생 시 파급영향이 큰 시설
숙박 시설 ⁸⁾	관광 숙박 시설	A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광역시 소재 5성 호텔
		B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지역 소재 5성급 호텔 등
		C	• A·B등급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테러 발생 시 파급영향이 큰 시설
대형 고층 건물	초고층 건축물	A	• 초고층건물(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1개 이상 보유한 건물
	준초고층 건축물	B	• 준초고층건물(30층 이상)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1개 이상 보유한 건물
	기타고층 건축물	C	• A·B등급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테러 발생 시 파급영향이 큰 건물

7)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중 지정),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

8)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중생활시설 등

● 비교

1. 이 기준에서 정의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은 위 용도로 이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함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
2. 관계기관의 장은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소관 시설 중에서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테러취약시설로 별도 지정·관리할 수 있음
3. 관계기관의 장은 이 기준에 포함하는 소관 시설 중에서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테러대상시설의 등급을 조정(상향 또는 하향)할 수 있음

● 여객운송장비

시설구분		등급	지정 기준
대분류	소분류		
운송장비	도시철도	A	• 여객수송에 사용되는 차량
		B	• 관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A급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
		C	• 없음
	여객선	A	• 국제여객선(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포함)
		B	• 1천톤 이상이면서 여객정원 300명 이상 여객선
		C	• A·B등급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테러 발생 시 파급영향이 큰 여객선
	철도차량	A	• 여객수송에 사용되는 차량(동차·기관차·발전차 포함)
		B	• 관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A급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
		C	• 없음
	항공기	A	• 승객 좌석 수 300석 이상 항공운송용 항공기
		B	• 승객 좌석 수 51석 이상 항공운송용 항공기
		C	• A·B등급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테러 발생 시 파급영향이 큰 항공기

별표 2 안전대책의 적정성 평가 항목(제12조관련)

1. 기관 특성에 맞는 대테러활동 추진 목표 제시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개별 관계법령 등의 인용
3. 기관의 소관사무와 테러대상시설등에 대한 적용범위
4. 소관 테러대상시설등의 체계적 관리
5. 소관 테러대상시설등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테러유형 도출
6. 테러대상시설등에 대한 출입통제 및 자체 방호계획 수립 또는 테러대상시설등에 대한 자체 방호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지침(참고자료) 제시
7. 테러 첩보의 입수, 전파체계 및 비상연락망 구축
8. 테러경보 단계별 부서 임무와 역할 지정
9. 테러 긴급대응을 위한 자체 조직 구축 및 반별 임무와 역할
10. 테러 발생 시 대상시설에 대한 자체 비상대피계획 또는 비상대피 지원계획
11. 테러 발생 시 긴급 구조·구호계획 및 반별 임무와 역할 지정
12. 테러 발생 시 수습 및 복구활동계획, 반별 임무와 역할 지정
13. 테러 피해자 지원 및 재발방지대책 등 사후조치계획
14. 관계 공무원·시설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15. 자체 언론대응 및 홍보계획
16. 기관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 적정성 평가계획
17. 기관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 이행실태 확인계획
18. 그 밖에 안전대책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비고) 소관 시설 등의 특성에 따라 적정성 평가 항목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별표 3 안전대책의 이행실태 확인 항목(제14조관련)

1. 자체 안전대책을 관련부서 및 관련 관계기관 등과 공유
2. 지정된 테러대상시설을 관련 관계기관 등에 통보, 지정 목록과 현황 자료에 최신 정보 반영
3. 테러대상시설등에 대한 자체 출입통제 및 방호계획에 따라 인력·장비 등을 투입 및 실제 운용
4. 테러 첩보의 입수 및 전파 체계에 따라 비상연락망 정비, 수집된 정보 공유
5. 테러경보 발령에 따라 부서별 임무와 역할의 수행
6. 간담회나 훈련 등을 통해 긴급대응을 위한 자체조직의 정상 운영 점검
7. 비상대피도 부착 등의 조치, 대피유도 및 현장통제 등 비상 시 조치사항 이행을 위한 교육·훈련 이행
8. 간담회나 훈련 등을 통해 긴급 구조 및 구호체계 점검 및 자료 수정·보완
9. 간담회나 훈련 등을 통해 수습 및 복구체계 점검 및 자료 수정·보완
10. 피해자 지원 체계 및 재발방지대책 등 사후조치 대책에 대한 훈련·점검 실시
11. 관계 공무원·시설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12. 자체 언론대응 및 홍보계획 숙지
13. 안전대책의 적정성 평가 및 후속조치
14. 안전대책의 이행실태 확인 및 후속조치
15. 그 밖에 안전대책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비고) 소관 시설 등의 특성에 따라 이행실태 확인 항목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테러대상시설 현황

① 대상시설	시설명:	< 시설 전경 사진 >
	소유자(또는 관리자) 성명:	
	대테러책임자 성명/직책/연락처:	
	관계기관 :	
	시설 소재지(주소):	
② 시설특성	크기(건축연면적 등):	이용객 수:
	시설종류:	시설등급:
③ 대테러 활동 현황	대테러 인력 수/ 주 · 야간 근무체계:	제한구역 지정현황:
	중앙통제실 근무체계/출입통제 대책:	순찰현황:
	대테러장비등 보유현황:	
	특이사항:	
④ 긴급대응 체계	비상대피로 현황:	
	경비지원 기관(경찰, 군 등):	

비고) 소관 시설 등의 특성에 따라 서식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테러이용수단 시설 현황

① 대상시설	시설명:	< 시설 전경 사진 >
	소유자(또는 관리자) 성명:	
	대테러책임자 성명/직책/연락처:	
	관계기관 :	
	시설 소재지(주소):	
② 시설특성	크기(건축연면적 등):	종업원 수:
	취급물질 및 물질 별 취급량:	
③ 대테러 활동 현황	대테러 인력 수/ 주 · 야간 근무체계:	제한구역 지정현황:
	중앙통제실 근무체계/출입통제 대책:	순찰현황:
	대테러장비등 보유현황:	
	특이사항:	
④ 긴급대응 체계	비상대피로 현황:	
	경비지원 기관(경찰, 군 등):	

비고) 소관 시설 등의 특성에 따라 서식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예방대책 업무편람

발행일 2023. 1.

발행인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편집인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디자인 (주)범신사 02. 720. 9786